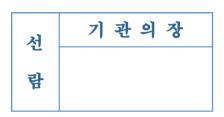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57호 2021. 12. 16.(목)

규 칙

0	사천시의회	규칙	제40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1
0	사천시의회	규칙	제41호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5	54
0	사천시의회	규칙	제42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5	56
0	사천시의회	규칙	제43호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6	52
0	사천시의회	규칙	제44호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9) 7
0	사천시의회	규칙	제45호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13	38
0	사천시의회	규칙	제46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14	.0
0	사천시의회	규칙	제47호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 15	52
0	사천시의회	규칙	제48호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8	32
0	사천시의회	규칙	제49호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18	35
0	사천시의회	규칙	제5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18	38

고 시

- 1					
ᅵ외					
· ,					
٦)					
닫					
U					
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

제 757호

사천시의회 규칙 제4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

제 757호

는 날인해야 한다.

- 1. 개최일시
- 2. 출석위원의 성명
- 3. 심의안건과 내용
-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험

-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제757호

있다.

-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0,000원
 - 2. 6급과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000원
 - 3. 8급과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000원
 -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 757호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 1. 7급 이상: 20세 이상
 - 2. 8급 이하: 18세 이상
-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 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 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 (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제 757호

수 있다.

-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
-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

제 757호

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 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 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 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과 별표 4

제 757호

와 같다.

-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아니한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1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1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 렬이어야 한다.
-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학졸업자: 6급 7급
 -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

- 는 사람은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 ⑥ 제1항, 제2항,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과 같다.
-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2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

제 757호

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제3장 임용

-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 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 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 3.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자격증 상위등급 소지자
-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가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22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23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 제24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 정직급 지정방법)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 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제26조(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별표 16
 - 2.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 별표 17
 - ② 제1항제2호의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

제 757호

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5와 같다.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시험 시의 구비서류(제5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 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 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 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 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2]

<u>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 관련)</u>

직렬		계 직류	급	5급이상	6.7급	8.9급
전	산	전 (터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 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속	기	李 7	7]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u></u> 한	전	운 ?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비고

-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5.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4]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신	전	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데	이터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선	신기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승	·기술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전기	다통신	-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술		기 능 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시설관리	시설	설관리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
				야), 조경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
				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

[별표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5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5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 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ᆉᄆᄼᆝᆌ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1 7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전문임기제	가급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17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나급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8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구
전 산	전 산 데 이 터	E 시 기니키키(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 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 보안)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 보처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 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8]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	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 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	6.7급, 연구시	· 가, 지도사	8.9 -	1.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 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9]

<u>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u>제14조 관련)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걸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따른		
행	정	일반행정		변 변	호 리	사사
방송통	투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	<u></u>	시설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5조제2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관련직무분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 비고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 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 (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11]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3항 관련)

◎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방송	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자학,	통신학, 전	자통신학,	통신설비	, 통신전송	5, 전자공학	-	
		전송기	술	통신(무선	[통신, 무선	선기술, 전	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별표 12]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4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3조제1항 관련)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 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 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 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비 고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4]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상당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기관 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임기제 공무원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1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工301日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국가정	군무원(특정직) 보원(특정직·일반직) 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교육	초·중등교원 소·중등 봉급표 교원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7	및 기타 대학교원	대학 : 17-23호봉	대학 : 11-16호봉	대학 : 7-10호봉	대학 : 6호봉이하		
	교육 봉급표 공무원 적용대상자	전문대학 : 19-25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별표 15]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7조 관련)

C	임용예정 계급	2 급· 연구관· 지도관	3 급· 연구관· 지도관	4 급 · 연구관· 지도관	5 급· 연구관· 지도관	6 급· 연구사· 지도사	7 급 · 연구사· 지도사	8 급	9 그
교육공무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학 교 및 동부설연구 소의교원 포함)	교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 교 수 전임강사 (2년이상)	전임강사			
원	고등학교			24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6 호봉 이상의 교 원	12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1 호봉 이하의 교 원		
]부투자기관 및 성부산하기관단체	이 사 (3년이상)	이 사	부 장	과 장 (차 장)	계 장 (대리)	평 사 원 (3년이상)	평 /	사 원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1.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행정, 세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 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 방송 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전자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 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 자통신, 통신선로)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 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 질경영) 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 강기) 기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 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 영,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경영)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 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 질경영, 영사)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배관)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

구 분	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 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 25

3.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의 종류 및 가산점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가산점
영 어	토플 530점(CBT197점), 토익 700점, TEPS 625점 이상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0.25
그 밖의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0.25

비고: 개인별 1개 언어만 인정하고, 외국어 시험성적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인정

[별표 17]

실적가산점(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분야	부여기준(요건)	배점	산 정 방 법	비고
7개 분야		3.0		
업무유 공개인 포상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개인표창 수상】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급(도지사포함)표창	0.7 0.5 0.4 0.3 0.2 0.1	o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개인이 받은 포상만 인정하되, o 포상이 2개 이상 중복되거나 격무부서, 대형이벤트사업의 추진성과 거양과 2중가산점이 인정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업무 관련 창안	【도 및 자체공무원 제안에서 제안채택】 .최우수상(1위) .우수상(2위) .장려상(3위) .제안제출 3회이상 【시정 혁신에 관한 제안 채택】 .최우수상(1위) .우수상(2위) .장려상(3위)	0.5 0.4 0.3 0.2 0.4 0.3 0.2	o 창안과 관련하여 채택된 안건 - 주 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인정 - 보조제안자는 배점의 1/2인정 o 시정혁신 과제 선정 - 최우수: 0.4 - 우 수: 0.3 - 장 려: 0.2	.경진대회 및 심사위원 회를 거쳐 대상자 및 배 점 결정
관련분	【사례집 발간】 .조직내 및 외부 배부 .조직내 배부 .논문발간 .업무편람 발간	0.5 0.4 0.3 0.2	o 담당직무와 관련된 논문이나 사례집 등 발간시 적용. o 2개 이상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배점결정.
정보화 능력	.공인된 기관의 정보 능력 평가 합격자	0.2	o 의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평가에 한함	
기관 표창	【중앙단위 평가】 .최우수상 .우 수 상	0.5 0.4	o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책평가 등을 통한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장 려 상 【도 단위 평가】 .최우수상 .우 수 상 .장 려 상	0.3 0.3 0.2 0.1	5·6급 및 담당자. o 기관수상과 개인표창의 중복 또는 2개 이상 기관 수상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각종 대회 수상	【공인기관.단체공무원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각종대회, 교육수료시 수상한 경우】 .최우수(1등) .우 수(2등) .장 려(3등) .친절공무원 선정	0.3 0.2 0.1 0.2	o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인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경진대회, 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 거양자 및 공무원 교육훈련 수료시 우수성적자. o 개인표창과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점	
0 0	【인사위원회 선정】 인사위원회에서 배점 0.5점 이 내 차등 부여	0.5 \ 0.1	o 인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중 실적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 및 배점 적용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 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	пВ	(한국	글)			사진
응시직급 (응시분야)			, ΄δ	- 6	(한기	아)			^「 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주민등록 번 호				_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전자우편			j	복수	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3	휴대	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생년월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20 년	월 일 ○○○장 @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78 - 78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4015 T
전자우편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⑩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 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 등 국 년 * 2 1 1 1 1 1 1 1 1 1				<u> </u>	김용후	보자등	록유	면서(원본)		및	l 연 5 회 ·	수	()년	도제 회
변환 변	※등록번호	제	회	번						응시:	지구(<i>7</i> 시 번]호) 호		지구	번
한 성	※ 급			직					2	칙	급	별		급	직
(영문)		(한글	-)					② 희망지역				*	·등록^	심사	
③ 주 소 전화번호: (사진부착) 중 대 폰: ○ 형역필 / ○ 먼제 / ○ 미필 / ○ 여성 전공.부문.과목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의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① 성 명	(한문	-)					제1지역			사	·진대조	:	서류	심사
		(영문	-)					제2지역	시 군				@		@
응연락처 휴대폰: 응병역의 / ○면제 / ○면제 / ○ 미권 / ○여성 ② 학 려 전공.부문.과목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④ 주 소														
⑤병역 ○병역필/○면제/○미필/○여성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의 기의 의 전공.부문.과목 의 기의 의 기의 의 기의	© 여라 처	전화	번호 :										(사	진부착)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의 시 격 면 하 의 상 별 연 월 일 종 병 연 월 일 사 항 대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9 2 4 4	휴 디	러 폰 :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⑥ 병 역			○ 병역	격필 /	○ 면제 /	′ () 1	믜필 / ○ 여성							
						⑦ 학		력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사 항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부문.ɔ	가목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사 항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사 항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사 항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 日本			⑧ 자 🤻	격 면 허					(9 성	}-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⑩ 경		력	1						
	부터			까지			경	력 사	ૅ ં	}-				발령청	}

	(※웅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 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여	이 없음을 서약하
사천시의회의?	장 귀하	출원자	(인)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군.구의회 〇〇과

- 3. 구비서류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 4. 등록워서 제출방법
 -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 5. 원서기재요령
 -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력…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벌…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⑥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2조제1항 관련)

순번	발	령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
순번		ਰ 구 분 □규임용	구비서류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경력증명서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 ・신원조사 회보서 1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부	편제 사유가 적힌 것 제1국민역 및 현역군을 제외한 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구청장・읍장
			· 등기사항증명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또는 면장이 발행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 5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장이 발행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 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일반 승진	•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부 •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승 진	그 밖의 승진	・일반승진시험 합격 통지서 1부・승진 순위표 1부・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부	
3		전 직	 ·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 전직시험 합격 통지서 1부 · 연구 및 기술 직렬의 해당 분야 확인서 1부 	
4	면	의원 면직	·사직원서(자필) 1부	

	직	직권 면직	•인사위원회 동의서, 진단서, 직권 면직 사유 설명서 또는 직권면직 사유를 증명할 서류 1부	
		당연 퇴직	· 판결문 사본 1부	
		정년 퇴직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5		강 임	· 강임 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 편·폐지, 예산감소 관계 서류 1부	
6		징 계	· 징계의결서 사본 1부	
7		추 서	· 공적조사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사망경위서 1부	
8	Š Z	딕 목직	·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현역증 서 사본, 입영 통지서 사본 또는 휴 직 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이 발 행
9	7	선 출 입	· 전출입 동의서 1부	
10	직	위 해 제	· 직위해제 사유서 1부	
11	시	보 임 용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1부	영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 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임용후보자명부

			1		_																
nlo □ nlo	中																				
개 에 ©	년 연 연																				
& 品	3																				
& &⊕	心																				
상 딸																					
현 연구소 소	ê x																				
# @	출신 학교명																				
<u>√</u> ®																					
西 昭 (9)	교필																				
하 (1)		در د	2	_	2	Н	2	ш	2	Н	2	Н	2	ר	2	Н	2	Н	2	ш	2
	尼																				
∰신원조사	压																				
] 추	수																				
	제1호																				
3	제2회																				
1010年	제3회																				
쌈	제4회																				
-	제5회																				
a	다요 1년 1일																				
(B) (C)	고 명				_																
oþο	무무																				
1 E	工品																				

*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 44 -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	---	---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고

- 첨 부 1. 임용자 명단 1부.
 -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 3. 미임용자 관계 서류 1부.

(발 신 기 관 명) 직 인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명	임 용 연 월 일	임용직급	임용직위	비 고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 고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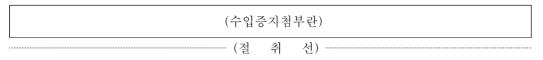
[별지 제5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7]	관	가	}	인								
	소속					2			3		직명		
1					ノ	시험			임용여	에정 그	직류		
	요구				구분		직 급		계급		급		
	한글					(5)			6		직명		
4	한자				ę	면령	만	세	현 직	급	직류		
											계급		급
7	가.				⑧ 필기	시허			제 1 차	l l시허	년 월 제 회1차		행
선택과목	나.				면제					사유	응시번호	ΙΉ	
(10)				최	- ⑪ 업보호	대사	군저 (보드	대자 '기간)	》 대		대장변	호	
자격.면허 훈련 등					교고로 여부 해당란(<u>l</u>	유공	기원) 자 및 가족	원 확	본	확 인 성	자 며	
					-11 0 12	"()		/17		<u> </u>	70	70	
위와같	날이 요구	함.								계		(사진	.)
į	년 월 ·	일			(인)				인	(3	.5cm×4	.5cm)
	시 험	요 .	ア ブ] 관	: 의	장							
	시 형	행 차 ·	수			1			2			3	
*	시행	연월	일								•	•	
시 험 시행사항	회	4	수	ス	1	회		제		회	제		회
\\\\\\\\\\\\\\\\\\\\\\\\\\\\\\\\\\\\\\	응 시] 번 :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丑		계			
년	시행	제		회		시험				인		(사진)	
임용예정 성					(급 -	류)							
이 시험요구.											۵) ۵ - ۲	v1 .n	-1 H -1 1
				년	월	일					것과 동약	서에 일한 원	첨부하는]판, 동일
)	시 험	실 시	기 :	관 의	장 [인)				한 규격		

작 성 요 령

-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 2. 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 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응 시 자 주 의 사 항

- 1.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 2.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실무수숩계획서

73 47 41	수 무 무 보		다 아 아 왕		기 応	시험구분	상명
실지 수습 기간 (일	수습 계획 기간 (일	배치부서	면인	임용일자		()직 제 회 5급공무원	
· · · ~ 일간)	· · · ~ 일간)			임용부서		<u>〉</u> 하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보시간	경력	합격일자	남 · 여 생년 월일
			nti2	시보단축기간		면원	면 원 일
				시보단축사유		유효기간	<i>₽</i> ≻
			일자 : 년 월 일 직위 :	보직부여		H 원	

[별지 제7호 서식]

년도 ○○시험 면접시험 평정표(제13조 관련)

필 기 적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각	본인필적 :	응시번호	
정 용 란		성명	(한글)
주 민	등록번호		(한자)

77 73 A		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햐"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70 78	불합격	
타 위원이 "햐"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학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1.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	다. 직렬(류)	
감 재	본인필적 :	응시번호	
정 용 란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면 지 A 3		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디	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우 수	
나 되면이 이도 생성만 성득	판 정	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미 흡	
	담 딩	•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9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감 재	본인필적 :	응시번호	
정 용 란		성명	(한글)
	생년월일	76 6	(한자)

25 7 A A		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	합 격	
7 7 2 7 7 2 8 8 8 9 7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딩	-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0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년 월 일 작성자 인

순 위		_		총		점수산출내역		
			소	성	평	숭진후보자		승 진임용
최초	조정	조정	속	명	정 점	명부상의	시험성적	예정직급의
					п	평 정 점	교육훈련성적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제 757호

사천시의회 규칙 제4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 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 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 757호

-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757호

사천시의회 규칙 제4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사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

제 757호

다.

-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
 -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 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757호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게 할 수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 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 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 이탈하게 된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1 11	0 0	,

>	ブ]간 또는	일시	사유	연락처	결재	
종별	부터	까지	일수시간	또는 용무	(전화번호)		

※비고

-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 재 함.
-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 분을, "까지"란은 시 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 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부서: 직급: 성명:)

(앞면)

부서명 :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월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担																
월																
包																
월																
븐																

(뒷면)

	ブ]간 또는	일시	사유	연락처	결재			
종별	부터	까지	일수시간	또는 용무	(전화번호)				

※ 비고

-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 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출 장 신 청 서

년 월 일

결				현 범					
재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한	ŠÌ-							
직급	성명	출장	목적	출장기경	<u>7</u> }	출	장지	서명	또는 날인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까지 부터 () 까지				
					까지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이동사항 :									
व्ये भो				정산					

제 757호

사천시의회 규칙 제4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

제757호

연한 기관·단체 및 그 소속원

- 다. 통계, 여론조사, 안내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이나 법인·단체
- 라.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와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조직, 자치법규, 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 나. 그 밖에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성 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한 공무원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사천시의회의원은 제외한다)과 사천 시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행동강 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명 및 상담요청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 757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정하 는 단순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
- 2.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경우(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②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장이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는 다음 각 호과 같다.
- 1.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2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2.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 757호

- 3.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 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 ③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 신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의장은 제3항의 조치 신청 대상자인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⑤ 행동강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제출해야한다.
- ⑥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행동강령 제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⑦ 의장은 행동강령 제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을 이용하여 현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조(고위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행동강령 제5조

제 757호

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은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행동강령 제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 2.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 제7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에서 제한하는 사적 접촉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포함)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 ②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8조 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제 757호

하다.

-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행동강령 제12조제2 항에 따라 의장이 정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제정책, 기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2. 도시계획·지역개발·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 3.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 제10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 ③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제 757호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1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②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해야 한다.
 - ③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세부사항 및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 ④ 행동강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은 월 3회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 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를 초과하여 하거나, 월 3회 이하의 횟수라 해도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 757호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 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 ②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행동강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행동강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제 757호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 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의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제1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해야 한

제757호

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7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의장과 행동강령책임 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8조(징계 등) ① 행동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사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③ 의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규칙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 ④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9조(교육) ① 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 ② 의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해야 한다.

제 757호

- 제2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그 밖에 이 규칙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제21조(기록 보관·관리) ① 의장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0조제1항 관련)

-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 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공무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 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비위 수수 행위	급액	1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수 동	감봉 • 정직 • 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기0	정직 • 강등 • 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수 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 아	강등・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수 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녕	해임파면	파면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Ż	H리일자
	성명		생년월일	
소명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시다스템이	성 명		생년월	일
상담요청인	소 속		직위(직	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	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시코이	소속	
신고인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성명	
직무관련자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청인	주소		
	연락처		
	성명		
업무 담당 공무원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5,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신청 원인	4. 자신 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7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 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	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참고 자료			
			년 월 일
사천시의회	회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	-----	-------

	의 견 서
성 명	
소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 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청인	소속		
건성인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	
신청 원인	4. 자신 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7 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 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	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참고 자료			
			년 월 일
사천시의회	회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업무 담당	소속			
공무원	직위(직급)			
	연락처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징
관련 사항	등, 4. 자신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여 !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단체, 5. 자신 또는 :	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	일	
		확인점검	검자 (인	į)

[별지 제8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	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1-1-1-1			
	였던 사업 또는 ⊤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직	성일자 : 20			
				신고자 :	(인)

[별지 제9호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고인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				. 징집	, 소
	성명		연락처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현 소속		1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	·음주 등의 향음	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녕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일자		
보고자	성 명		생년월일			
(상담요청인)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성 명		직 책			
인적사항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옏	일
	<u> </u>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	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 호) 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2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소속					
신고자	직위 (직급)			연락처					
0 -101	기관명			대표자					
요청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i>사</i>		일괄신고		균 횟수 : 균 시간 :				
사례금	총액 <u>천</u> 원() [교통비·숙박비·식비()				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3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소속				
신고자	직위 (직급)			연락처				
	기관명			대표자				
요청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시 분~							
사례금	총액 <u>천</u> 원 [교통비·숙박비·식비				l·숙박비·식I	1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방법 :	반환금	.액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섭수번호		섭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주민등록 (외국인등			
신 고 자	소속		연락처			
	주소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금품등을	주소					
제공한 자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일시					
금품등	장소					
수수 내용						
	금품등의 종류 및 가역	<u> </u>				
	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뱅법	반환 일시·장소 및 방	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르 (서명 또는	

[별지 제15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취구이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금품 (물품)						
반환금품	수량 (금액)						
및	받은일시						
처리내역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	류(사본) 첨·	부
	성명		주소				_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ı	년 월	Q.	ļ
		청구인			(서도	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ᆣᅶᠬ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포등의 <u>인</u> 도를 확	이한니다.

인도일: 20 . . .

(서명 또는 날인)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별지 제17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성명	소속	
인도자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0	세 동의함을 확인합 ^l	니다.
	20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8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	신고	신					신고자			제공자		이	관리			처	
일 련 번 호	접수	신 고 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도 일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결과	리일	비고

[별지 제19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신고자	성명	=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_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성명			연락처			
상대방	신고자와의 관계	[] 직	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	년공무원(임직원)(G	기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_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	약	[] 공시	계약		
거 래	성명			연락처			
상대방	신고자와의 관계	[] 직	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	변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부동산, 지	· 농차 등 거래						
71711 11511111	성명			연락처			
거래 상대방	신고자와의 관계	[] 직	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	년공무원(임직원)(여	기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신고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u>※</u> 소명	 자료 첨부	(시당 또는 인)	_

[별지 제20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긴	-	60일	
신 고 자	성명 직업 (소속) 주소				주민등 (외국인 연락처	록번호 등록번호)			
	성명								_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피신고자	주소								
(신고대상)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u> </u>					
※ 신고내용을	확인•조시	사하는 과정에	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	는데 동의하는?	디 여부	[] 동 [] 부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일시								
위반행위 내용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 [.]	부
비고									
 위와 같이 I	 피신고자(·	 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유	 위반행위를 신	 				
							년	월 (일
11-11		T L	71 <i>-</i> 1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년)
사선/	시의회의	상	귀하			010mm >/ 00	7mm[0]HLS	오지 60a/m²(재화요포)	\ 1

[별지 제21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딛	計유형	[] 방문	[] 전화	[] 기E	= ⊦()
	성명		생년월일					
상 담	A (TIO)(TIO)		-171-1					
요청자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경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	l관					(서명 또	는 인)

제 757호

사천시의회 규칙 제4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사천시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 1.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2. 직제조례와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관·국·과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제 757호

-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관·국·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국·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해야 한다.
 -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 ③ 같은 담당관·과·국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 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 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

제757호

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해야 한다.
-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도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해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해야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국·과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 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국·과에서 총괄 작성해야 한다.
 -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국·과 또는 작성자가 된다.

제 757호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 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의회사무국장이 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인계인수는 의정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해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 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 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

제757호

여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 ② 사천시의회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국·과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 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 천 시 의 회 사 무 인 계 인 수 서

- 1. 년 월 일 현재 사천시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19. 차량목록

<u>사무인계 · 인수사항</u>

	<u> </u>				
		<u></u> 항	목		
1. 의정방침	(전임자)	J	•		
2. 기구조직	현황표				
3. 정・현원조	는서				
┏3-1 정・	현원표				
L 3-2 직급	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u> </u>				
5. 역점추진입]무목록				
6. 중요지시시	·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	업무 조서				
8. 공약사업충	- 미결사업현황				
9. 요 계속추	진대상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계류	중인 사항				
12. 관인, 공약	민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목록	및 관련장부 목록				
16. 관사 비품	-목록				
⊢ 16−1 ਦੇ	사 비품목록				
16-2 시	무용 비품목록				
└ 16-3 도	서목록				
17. 중요 소도	L품목록				
18. 장비목록					
⊢ 18−1 ই	정장비목록				
∟ 18-2 ₹	설 기타장비목록				

	항	목	
20. 재고 물품조서			
┏ 20-1 유류 수불조서			
 - 20-2 약품 수급조서			
┗20-3 기타 자재수급조서			

- 21. 비축물자수급조서
- 22. 재산조서
- 23. 채권, 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 **└**23-2 채무조서
- 24. 세입세출예산현계표
 - ┏24-1 세입예산 현계표
 - | 24-2 세출예산 현계표
 - L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2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 27. 적립금조서
-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 30.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의 정 방 침

의정방침	세부시행방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의회사무국	담당관·과	전문위원실	팀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정·현원 조서

		계				일반직				별정	기능	지도	7]
7	구분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직	직	타
계	정원												
	현원												
의 회 기	정원												
사 무 국	현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소속	직명	성명	분장사무	담당일자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	71 173	١	내용	D 71	-1 -1	비]
부서 (팀)	건명	시행연도	사업개요	목적	현황	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지	시			
구 분 (지시자)	일자	건명	내용	진 척 사 항	주관부서(팀)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사업	내역		추진사항		예정완료
소관별	소관별	사업량	사업비	시행기간	(진도)	미결사유	시 기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공	·약			추진	상황		
공약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공 약 자	일시	장소	내용	대상 지역 또는 주민	소요 예산	내용	진도	미결 사유	금후 처리 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 -1 H)	7) pł		내용	계속추진	목적또는	예정완료
소관부서	건명	시행연도	사업개요	현황	사유	시기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소관별	건명	내용	현재진행상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 사항

사건명	사건개요	당시	.}ㅈ}	최초	재판	진행상황	소관부서
시신당	시신세표	원고	피고	일자	관할법원	~~~~~~~~~~~~~~~~~~~~~~~~~~~~~~~~~~~~~~	- 포런구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12호서식]

관인 · 공인목록

명칭	수량	규격	재료	신조또는 개각일자	주용도	간수또는 사용부서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담당관· 과·팀별	합계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ㅂ]	밀			음어	
담당관 과·팀별	계	I급	Ⅱ급	ᇤ급	대외비	자재	비고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소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담당관· 과·팀별	편찬연도	서류장부명	책수	보관장소	비고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16-1, 16-2, 16-3호서식】

비품목록

1.	관사	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ㅗ.			0 1	0	<u> </u>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2. 사무용비품

※별도 담당관·과·소별 비품대장과 같음

3. 도서목록

소관별	총수량	비고

※별도 담당관·과·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ŕ	= i	량				
담당관· 과·팀별	품종	규격	단위	계	전년 이월	수입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18-1, 18-2호서식】

장비목록

장비명	r) 6)	규격	수량 -			- 비고	
3 4 3	단위	T 4		신품	중고	사용불가	

※별도 담당관·과·팀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건설기타장비목록

상태			
중고 사용불기	— 비고 }		
	중고 사용불기		

※별도 담당관·과·팀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용자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20-1, 20-2, 20-3호서식】

재고물품조서

유료수불조서

유종별	단위	규격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도	취급부서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약품수급조서

담당관·		F) (i)	¬ →	대장상수량			원제크	コゖス	비고
담당관· 과·팀별	품명	단위	규격	수입	불출	잔량	현재고	과부족	미끄

기타자재수급조서

담당관·	담당관· 자재명		규격			보관장소	
과·팀별	\r\n\n\n\n\n\n\n\n\n\n\n\n\n\n\n\n\n\n\	단위	11 4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エゼガエ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	단위	규격		수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출사명	단귀	, , , , , ,	수입	불출	잔량	미국정소	선디구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ı		- 11			ı	
	구분		Ī	ミ ス	ี	건물 -	7	타
	1 4		필지	면적	동수	면적	필지	면적
	합계							
	3	그 계						
공유 재산	행정 재산 보통 재산	계 공용재 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재 산						
	उ	·계						
국유 재산		계 공용재 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채 권·채 무 조 서

[별지 제23-1호서식]채권조서

다다고.			체	:	권		
담당관· 과·팀별	건명	금액	발생일	소멸일자	목적 또는 사유 (조건)	채무자	
계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23-2호서식]채무조서(기채 등)

		목적		기채			잔액		7.1
일자별	건명	또는 용도	금액	이율및 조 건	상환 기간	환액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채권자	주관 부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세입·세출현계표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예산현계표

회계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비고
계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예산현계표

회계별	예산액	수입액(세입) ①	지출액 ②	잔액 ① - ②	비고

※잔고증명 별첨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관별	회계별	예산배정액	자금배정액	지출액	예산잔액	자금잔액	비고
계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 현계표

구분	수입	지출	잔액	예금종류	비고
계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예산과목		예산액	배정		집행잔액		비고	
ठ्ठे-	세항	목	에겐액	금액	미수령액	금액	금액	1 11 11

위 사실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종별	금액	기간	이율	통장번호	예금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기즈내	Ź	수 입	<u>l</u>	로출	7	산고	소 Al ロョ	보관장소 및
권종별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수입목적	관리부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조 팀별	건명 (내역)	예산액	배정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액	정산액	비고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전	도			정산		지출	과목
금액	목적	출납 공무원	일자	금액	과부족 액	세세항	목
		전도 금액 목적	글애 모저 출납	급애 모저 출납 임자	급애 모전 출납 의자 급애	글애 모전 출납 임자 글애 과부족	글 글 납 입자 글 애 과부족 세세하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별지 제31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담당관.	건명(내용)	문제점	조치	의견
과·팀별	신명(대공)	군세심	인계자	주관부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제 757호

사천시의회 규칙 제4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의정팀 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

제 757호

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757호

사천시의회 규칙 제4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 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 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 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사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757호

-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 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 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른 명예

제 757호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 1. 상위계급의 공무원
-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

제 757호

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 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 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 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폐쇄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

제 757호

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본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신청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 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1 천 시 공 보

7]	757	늣
M	ロクカス	Q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 비고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는 해당하는 곳에 "√"를								_		(앞쪽)
접수번호		접수	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7조•제8조에	명예퇴직 규정」제 따름
	① 소속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무원이 임기제공무원의 우만 작성)	임기제공 두 으로 신분	'원이 아닌 ' 단절 없이 일	경력직공 임용된 경	③ 공무원 구		일반직 특정직()	④직급 (호:	•계급•직 봉)	무군
	⑤ 성명 한글 한자				⑥ 생년월일⑦ 주소						
신청인	8 전호번호(지택)				<u> </u>	F	<u>년</u> 월	<u> </u>	⑩ 정년	일	
기재란	① 비위·형벌	사항 [] 있	음 []	없음	[] 비위조사 [] 「지방공 요구 필요 [] 징계처분의 [] 형(刑) ⁹ [] 형법	중 [무원법 2 요구 중 [확정(확장 제129	수사진행 제73조제(징계의결 외 정일: 조부터 제13	중 [] 현 3항에 따라 2구 중[] 6 2조까지에 1형:	경사재판 계 사 수사 결과 징계처분으로 명량: 규정된 받	류 중 과가 통보되어 2 승진임용 제한 2) 1회 관련 형의	기간 중 선고유예
					· '(선고일: [] 「형법」 정일: [] 「형법」 고일:		고 고든 세3 . 형량:	30호에 ㅠ) 3조에 규정!	경진 함피(직무 관련) 형 ² 관련) 형의 선	49(4
	⑫ 정년 구분	[]연령		[]계급	ì정년	(13)	정년		세(년	!)	
	(14) 경력직 퇴직 또는 임기제 경과기간	후 특수 임용 후	경력직 토 퇴직 시	직 시 까지의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담((인)	당관	
	(화 정년잔여기간 (수당)급대상기간	(년 개 년 가	월 월)	⑩ 수당청구	'액 및	산출내용	2			
소속 기관 기재란	①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 [] 없	0 00 0		조방구분 위지 요처 위지 요체계(제형일 : 법 : 법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제1292	- [] 징계의결 정일 조부터 제132 , 선고형: 조 또는 제3:	:조까지에 :) 56조에 규) 6조에 규정!	징계처분으 형량 : 규정된 범조 정된 범죄(베류 중 결과가 통보되어 로 승진임용 제한) I 관련 형의 선 직무 관련) 형 ¹ 관련) 형의 선	난기간 중 고유예(선 ! 확정(확
		확인	인사담당	관	(인)	연금담!	당관	(인	감사담!	당관	(인)
「지방공	¦무원 명예퇴직수	당 등 지	l급 규정 _.	. 제63	조에 따라 명(신청		수당의 지	급을 위외 년	월	신청합니다. 일 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 2. 명예퇴직원(「 3. 경력증명서 1부	지방공무	원 명예퇴	직수당 성	등 지급에 관한	· 규칙(표준안)」 t	별지 제2호	5서식) 1부	!	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	실임을	확인합니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사천시	의회의장 🗦	비하									
2.	신청인 기재란은 신 「지방공무원법」 제(합니다. 다만, 같은 항	66조의2제(3항 각 호의	이느 하	나의 사유에 해당	당하면 팀	법령에서 정힌	· 절차에 [[나라 받은 명	에퇴직수당을 변	반납하여야
					처리절치	-					
	성서 작성 ■ 신청인		접 수 속 기 관		지급결정 및 지 방 자 치	! 통보				지 당 자 초	
	·			· <u></u>	·						_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종류를 적습니다.
-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 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 호봉을 적습니다.
-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 6. ⑫ ~ ⑪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 9. ⑯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10. ⑪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	•계급:									
4. 성	명:									
0 8	병예퇴직 사	유: ㅠ:								
*	명예퇴직 사유	를 구체적으로	보적고, 재	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	기(기간)	등을 명	시합니다	∔ .
	병예퇴직 신행									
*	명예퇴직 희망(적습니다.	일은 「지방공무	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구	·정」 제6조	조제2항에 ㄸ	나른 수시	명예퇴각	딕 신청자	다만
본인은 바랍니다	자유의사에 다.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	칙하려고	하니	허락히	수 주
								년	월	일
			신청	인				(서당	명 또는	인)
사천시!	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	다는 곳에 √표들 8	갈니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름
소속				공무원 구분	[]일반적 []특정적 []별정적		지급 • 직무 (호봉)	군 또는 상당 계급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	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딩	등 지급 규정」	제11	조에 따라 조기	기퇴직수딩	지급을 위	위와 같이 신청	헝합니다.
				N ÷ LOI				년 월 일
		귀하	í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출하지 않아도	사본 1부. 디만, 인사 E 됩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어 이
				확인 인시	l 남당			(인)
위와 깉	이 확인합니	다.					1 의	O.I.
				나이			년 월 '니머 ㄸㄴ	일
사천시의	의회의장 구	니하	1	닌청인		((서명 또는	선)
비고: 신청인 기자	내란은 신청인 본인	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	당자가 적습니	- 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	성 📗	접 수		지급결정 및 통	<u>-</u>	신청인	통지	지 급
신청인		소 속 기 관		지 방 자 치 단	체	소속기	기 관	지 방 자 치 단 체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년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의장 귀하				

제 757호

사천시의회 규칙 제4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 2.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제 757호

- 3.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 4.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 5. "재택근무자"란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및 일과근무시간 외 사무실 대기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 제5조(당직근무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 1. 일직 및 숙직: 60,000원

- 2. 재택근무자: 30,000원(재택근무자 수당은 재택 당직자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비상근무, 행사추진 등을 위해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무인전자 장비의 출퇴근 기록이나 초과 근무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토록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만 부서의 장은 사천시의

- 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택당직근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⑤ 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1. 각 부서별로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 설치
-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 연락체계 강구
- 3. 재택근무 중 발생되는 각종 긴급사태 조치 계획
- ⑥ 일과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는 비 상근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⑦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택당직에서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 1. 풍수해, 설해, 산불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 2. 그 밖에 행정상 지원 등 긴급조치사항 발생시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2항에 해당 하는 공무원 중에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제 757호

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 1. 야간 사건·사고 발생상황
 -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0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근무할 수 있다.
 -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

- 이 전원이 근무한다.
-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자는 재택근무지를 말한다)에 위치해야 하며, 전·후반 교대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해야 한다.
 - ② 당직사령은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음주·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 제13조(당직차량의 운영) ① 의회사무국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한 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 ② 당직차량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할 수 없다.
 - ③ 선임운전원은 당직운전원의 근무순번을 정하여 당직명령부서에 통보해서 한다.
- 제14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 1. 청사 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
-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 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 하여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당직명령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무인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팀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 ③ 숙직에 있어 당직사령은 당직반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에게 급보
 -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 ② 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와 군부대 및 의장에게 급보해야 한다.
-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사태가 발생할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 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 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 3. 직원 비상소집대장
 -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제 757호

- 5. 비상열쇠 보관함
- 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수칙
- 7. 당직명령서
-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의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 제17조(비상당직사령) ① 시의회 소재지에 위치하는 시 단위 이상 각급 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근무협조체제의 확 립과 지역단위 비상업무 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 휴일의 당직은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기관 상호 협의에 따른다.
 - ③ 제1항의 비상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 ④ 비상당직사령은 시의회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시의회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당직반장)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해야 한

제757호

다.

-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 2. 당직근무상황
 -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 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 제20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 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
 -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제 757호

경우

-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 게 증가된 경우
 -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 협이 있는 경우
-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 제21조(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 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 2. 의회사무국의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점 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 하거나 복귀시킨다.
- 제22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의회사무국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 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발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해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
 -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 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 제23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부 서장은 평시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 제24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

제 757호

에 임한다.

-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 제25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현지근무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26조(비상당직) ① 비상근무령 발령 시 평시 시의회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된다.
 -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행정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행정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보고
 -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요원은 의정팀장이 편성한다.
 -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 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 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 ⑤ 비상근무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 제27조(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의회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제 757호

설치한다.

-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전화
- 2. 행정전화

가. 당직실

나. 당직사령관

- 제28조(비상당직 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보좌관으로 바뀌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의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 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에 보 고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10호서식)
- 제29조(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 1.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 3. 비상근무현황(별지 제7호서식)
 -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0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명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 1. 청원경찰 근무지
 - 2. 각 사무실 외곽
 -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제 757호

- 4. 청사내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 5. 비상근무 중인 사무실
-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장과 당직사령에게 급보하여야 한다.
- 제31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 제32조(통신시설) 의장은 비상근무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 제33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비상소집업무담당 부서에 신고해야한다.
- 제34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제2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

제 757호

집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해야 한다.

② 의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해야 한다.

제35조(운영규정) 의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당직근무자 편성기준(제7조 관련)

구분	근무자의 편성									
一	일직		숙직							
사천시의회	사령(5급) 반장 (6급 팀장) 반원 (6급 이하 직원) 운전원	1 명 1명 2~3명 1명	사령(5급) 반장 <u>(6급 팀장)</u> 반원 <u>(6급 이하 직원)</u>	1 명 1명 2~3명						

실과명 :

万口 上口

压 丰

nie ne	
市 中	T L
최 종 퇴청자	100
선류보반상태 등 당 지 그무자	ישו ז לדון
면 챙 자 와	元
정소상태	11-11
전 전 자 아	-
소등상태	7.7 1.11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11-11-
화기단속상태 함층 당지 지리청자 근무자	ال- ۱ د د
변화 장 다 자아 다	
상자 당 지 근무자	ווייניג
최종도	
점검시각 최종퇴청자 각 성명	+1 -1 -1 -1
	11 111
점검 당직근무자 각 성명	
결제	
비고	

[별지 제2호서식] 전면

년〉	사항)	(특기	사항	守	고 소	꾸		丛			卯		
순찰시간										ر - ا	肯七区右		
발견사실							:			}	· · · ·	(도도	中
引入		市局		以							丛 묘	虚	7
처리개요											<u></u> 还	uo.	4
순찰가											<u></u> 소 묘	(일) (학	4
보고시간				A 全 字 平	ᆀᆐ				바				40
12				인원 특근 수 시간	다 각				문서번호		문서	일기	<u>X</u>
正 百				<u>+</u> 특근사유	% 전						· 참 수 ,		
사 항					5				포		사항	ᆚ	LIJZ
				인적사항	외부인								담당자
上二十	 			o ं p	사출임				ر - -	이수자	į		담당주사
수화자				닉ㅁ	<i>수</i> 학				- -	이계자			과 장

	기관명 시간 (이상유무) 성 명 성 명	연락사항 수화자 송화자	당격사항기록
		민원인 민원내용	야 간 민 원 점 수

[별지 제3호서식]

기관장 윤번대기 근무일지

일시: 년 월 일(일·숙직)

당직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특				
					7]				
					사 항				
	전화	번호	당직확	 ·인사항		기관장소~	· 대확인사항		
기관별	사무실	자택	시간	이상 유무	확인 시간	소재지	확인 시간	소재지	비고

지시받은사항 지시한 사항 보고사항 ᄺ 비상근무 제 호 근무명 Shn Shn වග වග 당직사령 실과명 시부터 시까지 직명 o 스 요 서명 비상근무일지 조치결과학인 否言 인계사항 조치사항 문서번호 발송 수신처 문서처리상황 제목 对当人下 인계 正[H

[별지 제4호서식]

비 상 |>

区边 대상자명 宀

1차 : 자기집 전화번호 2차 : 이웃집 전화번호

[별지 제6호서식] 시간별 불 急给 사고 겍 비상소집 현재원 원 왕의 ٢٥ 弘 다와 多る ०िए 사고 현재원 수 말

일 일 비 상 근 무 상 황

년 월 일

1. 당직사령							
2. ○ 비상근무 ○ 조		명					
3. 산하기관 (총 명)							
기관별	총사령	근무인원	전화번호	비고			

[별지 제8호서식]

상황처리상황

년 월 일

기관별	일시	수신처	내용	비고
7]				
타				

[별지 제9호서식]

비상근무자명단

○ 비상당직사령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별	소속	직급	성명	비고

[별지 제10호서식]

전언통신문

	분류번	ই					
	수신						
	발신						
	제목						
				내용			
1							
2							
3							
4							
5							
		송화지	}-		수	화자	
7	직위	성명	송화일시	직위	성명	수화일시	서명

○ 조치

구분 기관별	일시	수신처	비고

제757호

사천시의회 규칙 제4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및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의정담당주사"를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제757호

다.

-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 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 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사람 중에서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0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의장이 유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 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 757호

-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 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757호

사천시의회 규칙 제4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시의회"를 "사천시의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시의회(이하 "의원"이"를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을 "법 제77조제1항" 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757호

제4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의장의"를 "의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제4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 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 제57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757호

-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6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757호

사천시의회 규칙 제5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의 개정)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사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2조(「사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개정) 사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로 한다.

^ 1 천 시 공 보

제757호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757호

사천시 고시 제2021-365호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0-426(2020.12.24.)호로 시행계획 변경 고시된「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5,95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mark>(변경</mark>)

가. 시행계획 변경 내용

사업	제달시어	시어케스	사업비(비고	
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당초	변경	비끄
	합계		5,950	5,950	
기초	· 생활기반확충		4,195	4,152	
	사남중심지 활성화센터 조성	센터신축 657.4㎡	3,922	3,918	
	경로당 리모델링	리모델링 89㎡	142	136	
	사계절 다목적구장 조성	다목적구장 조성 273㎡	131	98	

제757호

사업	게보기시	기시케스	사업비(nj –	
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당초	변경	비고
지	격 경 관 개 선		774	815	
	수변산책로 정비	산책로 조성 293㎡	774	815	
지	역 역 량 강 화		372	372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	1식	176	176	
	주민 복지 프로그램	1식	104	104	
	홍보마케팅/컨설팅	1식	-	_	
	마을경영지원	1식	92	92	
부	대 비 용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609	611	

나. 변경 사유

사업분야	세부사업	변경사유
	사남중심지 활성화센터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주차장 콘크리트포장, 체력단련장 탈의실 붙박이장, 신발장 등의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반영 및 안전관리비, 4대 보험료 등 실 집행액 반영
기초생활 기반확충	경로당 리모델링	안전관리비 및 4대 보험료 등 실 집행액 반영
	사계절 다목적구장	심판대 등 족구장비 1식 추가, 조명타워 삭제 등 추진 위원회 의견수렴 반영 및 안전관리비, 4대 보험료 등 실 집행액 반영
지역경관 개선	수변산책로 정비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음수대, 차양시설 등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반영 및 안전관리비, 4대 보험료 등 실 집행액 반영
지역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	해당없음
부대비용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농어촌정비법 요율 적용 및 실 집행액 반영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6.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7.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17년 1월 ~ 2021년 12월 31일

■ 변 경 : 2017년 1월 ~ 2022년 12월 31일

^1 천 시 공 보

제757호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일 련	소지	내지			편입면	적(m²)	3	소 유자	소	:유권 이 권리명		
년 번 호	면	리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비고
			합 계			4,304						
1) 人	나남중심	지 활성	화센터 조	:성		2,105						
1	사남	화전	1586-1	전	245	122	사천시					
2	11	4	1586–2	답	499	499	사천시					
3	4	4	1586–3	전	69	69	사천시					
4	4	1/	1589–1	답	695	194	사천시					
5	′/	1/	1589-6	답	1,055	381	사천시					
6	4	1/	1589-9	답	1,042	207	사천시					
7	′/	1/	1589–11	전	20	20	사천시					
8	4	1/	1589–13	답	63	61	사천시					
9	′/	1/	1589–19	답	327	13	사천시					
10	′/	1/	1589–20	답	274	125	사천시					
11	′/	1/	1589–21	답	40	40	사천시					
12	′/	1/	1589–22	답	220	220	사천시					
13	1	1/	1589–23	답	132	132	사천시					
14	′/	4	1589–48	답	31	19	사천시					
15	′/	1/	1606–71	도	762	3	국(건설부)					
2) 人	2) 사계절 다목적구장 조성			713								
1	사남	죽천	47-1	체	696.4	691	사천시					
2	′/	′/	47-2	대	303.1	6	사천시					
3	′/	"	47-3	공	485.6	13	사천시					
4	4	"	49	도	2,896.7	3	사천시					

제 757호

	,,											
일 련	소지	내지			편입면	적(m²)	3	소 유자	소	:유권 이 권리명		
년 번 호	면	리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비고
3) 숙) 수변산책로 정비			1,397								
1	사남	화전	1589-2	천	528	165	사천시					
	4	"	1589-5	답	252	1	사천시					
2	4	//	1589-6	답	1,055	674	사천시					
3	"	"	1589–19	답	327	234	사천시					
6	1/	4	1589–38	도	13	1	사천시					
	11	"	1589–48	답	31	12	사천시					
7	11	"	1590	천	3,160	72	경상남도					
8	4	"	1592-2	천	2,654	80	국(국토부)					
	"	"	1606–36	천	281	55	국(건설부)					
	"	"	1606–71	도	762	103	국(건설부)					
4) 7	령로당 리	기모델링				89						
1	사남	화전	1271	대	1,299	89	병둔 향토회					

9.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지역개발부(055-851-81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제 757호

사천시 고시 제2021-366호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시천시 고시 제2020-427(2020. 12. 24.)호로 시행계획 변경 고시된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곤명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솔사, 다자연 녹차 등 자원을 활용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 5,40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가. 시행계획 변경 내용

사 업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분 야	세구/[집	小月刊五	당초	변경	山工
	합계		5,400	5,400	
	소 계		3,651	3,621	
기초생활	다솔문화센터조성	부지 2,646㎡ (건축 연면적 303㎡)	1,720	1,851	
기반시설	녹차공원조성	A=436 m²	166	178	
	공동생활 홈조성	공동홈 조성 1식	475	429	

^ 1 천 시 공 보

제757호

기초생활	배후마을 연결도로	L=260m	384	499	
기반시설	김동리 산책로정비	L=785m	906	664	
	소 계		909	950	
지역경관개	중심 가로경관정비	L=540m	231	342	
선	봉명로 가로경관조성	L=580m	453	345	
	생태하천 정비	1식	225	263	
	소 계		840	829	
2.22.2	교육 및 견학	1식	373	288	
지역역량 7 장 화	컨설팅	1식	104	92	
	운영지원	1식	39	45	
	부대비용(기본계획 수립 등)	1식	324	404	

나. 변경 사유

사업분야	세부사업	변경사유
	다솔문화센터 조성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다솔문화센터 내 체력단련장 운동시설, 탈의실 붙박이장, 신발장, 주변 정자 리모델링등의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반영
기초생활	녹차공원 조성	조성된 공원 내 식재 추가 등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반영
기반확충	공동생활홈 조성	내부 인테리어 조정 및 변경 등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반영
	배후마을 연결도로 조성	보도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반영(추가 신규사업 토지보상 포함)
	김동리 산책로 정비	식재 및 기존 공정 변경 등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반영
1 +1 -1 -1	중심가로 경관정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반영
지역경관 개선	봉명가로 경관조성	보도정비 추가 건의 등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반영
/ 4	생태환경 정비	식재 및 기존 공정 변경 등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반영
지역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	각 분야 역량강화사업 설계 변경 등 추진위원회 의견 수렴 반영
부대비용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농어촌정비법 요율 적용 및 실 집행액(사무장) 반영

^ 1 천 시 공 보

제757호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6.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16년 ~ 2021년 12월 31일

■ 변 경 : 2016년 ~ 2022년 06월 30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 토지 조서(당초)

일련	소자	대지	지	번	지	편입면	적(m²)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의	
번호	면	리	이동전	이동후	목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비고
1) 녹	차공원 :	조성											
1	곤명	봉계	290	290	대	170	170	사천시					
2	곤명	봉계	291	291	대	143	143	사천시					
3	곤명	봉계	산45-1	산45-6	임	4,432	88	국토교통부					
2) 공동생활 홈조성													
1	곤명	봉계	147	147-1	전	1,018	320	사천시					
3) 김-	동리 산	책로 정1	申]										
1	곤명	봉계	910-1		천	553	142	경상남도					
4) 중	심 가로	경관정비											
1	곤명	봉계	206-3	206-3	답	3	3	사천시					
5) 봉 ¹	명로 가.	로경관조	-성										
1	곤명	봉계	181-23		도	562	454	김*원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				
2	곤명	봉계	216	216-3	대	340	4	사천시					
6) 다	솔문화선	l터 조성]	1	1	1		,					
1	곤명	봉계	205-1	205-6	철	4,284	2,646	사천시					

제757호

○ 토지 조서(변경)

일련	소지	기	지	번	지	편입면	적(m²)	-	소유자		소유권 이 권리명	세	
번호	면	리	이동전	이동후	목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비고
1) 녹치	·공원 조	존성											
1	곤명	봉계	290	290	대	170	170	사천시					
2	곤명	봉계	291	291	대	143	143	사천시					
3	곤명	봉계	산45-1	산45-6	임	4,432	88	국토교통부					
2) 공동	2) 공동생활 홈조성												
1	곤명	봉계	147	147-1	전	1,018	320	사천시					
3) 김동	등리 산최	백로 정비	1			•				•	•	•	
1	곤명	봉계	910-1		천	553	142	경상남도					
4) 중심	님 가로?	병관정비											
1	곤명	봉계	206-3	206-3	답	3	3	사천시					
5) 봉명	흥로 가료	르경관조	성										
1	곤명	봉계	181-23		도	562	454	김*원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				
2	곤명	봉계	216	216-3	대	340	4	사천시					
6) 다설	_슬 문화센	터 조성								•		•	
1	곤명	봉계	205-1	205-6	철	4,284	2,646	사천시					
7) 배측	후마을 인	년결도로 -	조성										
1	곤명	봉계	616	616-2	전	1,458	730	사천시					

8. 관계 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757호

사천시 고시 제2021-368호

용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시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1-278(2021.09.30.)호로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된 『용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용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일반 농촌지역에 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기능한 생활터전

유지 및 쾌적한 농촌 정주공간 조성

3. 사업비 : 5,797백만원(국비70%, 지방비30%)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 3,797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가. 시행계획 변경 내용(당초)

(단위: 백만원)

사업분야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고
	합계		5,797	
기초생활기	기반확충		2,906	
	오동지교류센터(용현면 행정복지센터)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내 2층, 3층) - 연면적 : 1,621.26㎡ (행정복지센터: 886.71㎡. 오동지교류센터: 734.55㎡)]	2,075	
	오동지교류센터(별관)	연면적 : 209.45㎡	593	
	마을회관 조성	연면적 : 88.11㎡	238	

제 757호

지역경	관개선		1,704	
	중심가로 환경정비	도로 폭 확장(L=210.0m, W=1.5m)	184	
	송지천 수변산책로 조성	건강마당 A=664.6㎡	547	
	얼쑤한마당	쉼터 및 광장 조성 A=786㎡	973	
지역역	· 량강화		426	
	지역역량강화	교육, 홍보마케팅, 권역컨설팅, 정보화구축, 마을경영지원 등	426	
부대비	8	기본 및 실시설계 등	761	

나. 시행계획 변경 내용(변경)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고
	합 계		5 <i>,</i> 797	
기초생힅	날기반확충 		2,848	
	오동지교류센터(용현면 행정복지센터)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내 2층, 3층) - 연면적 : 1,621.26㎡ (행정복지센터: 886.71㎡. 오동지교류센터: 734.55㎡)]	2,075	
	오동지교류센터(별관)	563		
	마을회관 조성	연면적 : 88.11㎡	210	
지역경관	· 가선		1,677	
	중심가로 환경정비	도로 폭 확장(L=210.0m, W=1.5m)	166	
	송지천 수변산책로 조성	건강마당 A=664.6㎡	549	
	얼쑤한마당	쉼터 및 광장 조성 A=786㎡	962	
지역역령	· · · · · · · · · · · · · ·		426	
	지역역량강화	교육, 홍보마케팅, 권역컨설팅, 정보화구축, 마을경영지원 등	426	
부대비용	3	기본 및 실시설계 등	846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6.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시장

7. 사업시행기간: 2018년 1월 ~ 2022년 12월(5년간)

제 757호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가. 토지 조서

	소지	대지		7]	편입면	적(m²)	소 ·	유 자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구 분	면	리	지번	지 목	대장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비고
계(29)					54,863.1	4,754.7							
1) 오	동지고	고류센	터(용 현	년면 ¹	행정복지선	<u></u> 멘터)				•			•
1	용현	송지	201-6	대	71.0	3.0	사천시						
2	용현	송지	201-9	대	221.0	142.0	경상남도						
3	용현	송지	216-9	도	16.0	16.0	경상남도						
4	용현	송지	216-10	대	17.0	17.0	경상남도						
5	용현	송지	227-1	대	712.0	616.0	사천시						
6	용현	송지	227-5	·' 전	488.0	488.0	사천시						
7	용현	송지	228-1	대	1,527.0	1,527.0	사천시						
		소계			3,052	2,809	,						
2) 오	동지고	고류센	터(별관	<u></u>) 및	얼쑤한미	나당 조성							
1	용현	송지	229-4	대	426.0	426.0	사천시						
2	용현	송지	230-4	대	307.0	307.0	사천시						
3	용현	송지	231-5	대	53.0	53.0	사천시						
4	용현	송지	229-2	도	112.0	29.8	사천시						
5	용현	송지	230-2	도	142.0	33.5	사천시						
6	용현	송지	231-3	도	417.0	17.7	사천시						
0) =1	ο ə) =	소계	<u> </u>		1,457	867							
	을회관												
1	용현	송지	407-4	대	103.0	103.0	사천시						
N 3	21-1=	소계	# 고) 11)		103.0	103.0							
(4) 중			경정비	I						T			
1	용현	송지	274-2	도	182.0	6.0	사천시						
2	용현	송지	274-15	도	25.5	1.0	사천시						
3	용현	송지	275	임	185.0	28.6	조*호						
4	용현	송지	274-16	도	67.4	2.7	사천시						
5	용현	송지	1172-11	도	55.8	10.0	국토교통부						
6	용현	송지	279-5	대	782.4	81.5	경상남도						
7	용현	송지	1163-1	천	47,836.0	181.3	국토교통부						
		소계			665.9	244.3							
[5] 송	지천	수변선	산책로	조성									
1	용현	송지	308	대	175.0	175.0	사천시						
2	용현	송지	309	대	255.0	255.0	사천시						
3	용현	송지	310-1	대	125.0	125.0	사천시						
4	용현	송지	310-2	대	41.0	41.0	사천시						
5	용현	송지	1173-5	도	521.0	68.6	국토교통부						
		소계			48,931.9	855.6							

※ 용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실시설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055-851-814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757호

사천시 고시 제2021-369호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1-87호(2021.04.22.)호로 시행계획 변경 고시된「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의 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3,286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가. 시행계획 변경 내용(당초)

(단위: 백만원)

사업분이	부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고
	합 계		3,286	
기초생활	할기반확충		1,750	
	정동권역 문화·복지공간 조성	센터 신축 180㎡, 다목적체육공간 신축 215㎡	1,750	
지역경된	관개선		780	
	수청마을 숲 정비	주차장 A=1,697㎡, 화장실 등	388	
C	예수마을 쉼터 조성	휴게시설 1식	55	
	계수마을 둘레길 조성	둘레길조성 420m	325	
1	권역 안내판	1식	12	

제 757호

지역역	량강화		215	
	교육 및 견학	1식	39	
	홍보마케팅	1식	29	
	컨설팅	1식	18	
	정보화구축 및 운영지원	1식	22	
	마을경영지원	1식	107	
부대비	8	기본 및 실시설계 등	541	

나. 시행계획 변경 내용(변경)

(단위 : 백만원)

사업 분야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고
	합 계		3,286	
기초성	생활기반확충 생활기반확충		1,888	
	정동권역 문화복지공간 조성	센터 신축 116.64㎡, 다목적체육공간 신축 199.82㎡	1,888	건축면적 변경
지역경	형관개선		637	
	수청마을 숲 정비	주차장정비, 마을쉼터 신설	263	- 「고읍선인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사업」 편입으로 인한 사업변경
	예수마을 쉼터 조성	사업삭제	0	- 사업삭제
	예수마을 둘레길 조성	둘레길조성 420m	362	
	권역 안내판	1식	12	
지역역	부량강화		215	
	교육 및 견학	1식	39	
	홍보마케팅	1식	29	
	컨설팅	1식	18	
	정보화구축 및 운영지원	1식	20	
	마을경영지원	1식	109	
부대비	<u> </u>	설계비, 감리비 등	546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6.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5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변경: 2015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1 천 시 공 보

제757호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당초)

	소지		1(04		편입면	적(m²)	2	· 소유자	소	유권 이 권리명	외의 세	
의전번호	면	리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비고
	11 41		합계	- >>		7,483						
1) 8	동권역		사지공간 <i>조</i>			2,439						
1	정동	대곡	668-3	답	852	852	최*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센터
2	4	4	668-11	답	374	374	4					4
3	4	"	668-12	답	121	121	4					<i>/</i> /
4	"	"	655-2	답	151	151	사천시					쳏육 장찬
5	ク 5 まり ら	// トコロ	656-2	답	941	941	사천시					1/
	-청마을			-1	2252	1,699	-2.22.2					
1	정동	수청	112-1	천	2978.0	37	경상남도					
2	1/	"	137-2	도	483.0	47	농립축산 식품부					
3	"	"	139	답	457.0	457	사천시					
4	4	"	139-1	답	861.0	861	이*임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				
5	4	"	139-2	도	181.0	148	사천시					
6	4	"	139-3	도	83.0	81	사천시					
7	4	"	139-4	답	40.0	37	경상남도					
8	4	"	139-5	답	31.0	4	경상남도					
9	1/	"	258	천	70,539.0	27	국토 교통부					
3) à	수마을	쉼터 2	조성			880						
1	정동	예수	446-2	답	830	90	기타 법인 단체					
2	1/	4	447-2	답	31	31	사천시					•
3	1/	1	667-16	답	770	616	사천시					
4	4	"	797-3	도	405	143	농림축산 식품부					
4) a	수마을	둘레길	조성			2,465						
1	정동	예수	754	구	7,058	1,750	농림 축산 식품부					
2	4	"	180-3	답	1,573	327	진*임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				
3	4	"	180-4	답	142	142	영화*** ***	진주시 상봉동 ***				
4	7	/	181-6	대	443	57	이*수	사천시 정동면 옥산로 ***, ***동***호	정동 농업 협동 조합			
5	′/	"	181-8	답	152	152	′/	"	"			
6	Ŋ	"	180-9	도	37	37	진*임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				

제 757호

나. 토지조서(변경)

일 련	소지	내지			편입면	적(m²)	2	· 소유자	소	:유권 이 권리명		
년 번 호	면	리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비고
			합 계			5,223						
1) 3	동권역	문화·복	H지공간 조	<u>-</u> 성		2,439						
1	정동	대곡	668-3	답	852	852	사천시					센터
2	1/	1/	668-11	답	374	374	"					"
3	1/	1/	668-12	답	121	121	"					<i>/</i> ≃11 O
4	"	"	655-2	답	151	151	사천시					체육 공간
5	"	"	656-2	답	941	941	사천시					1/
2) 4	-청마을	숲 정비]		1	1,699		1		T	I	
1	정동	수청	112-1	천	2978.0	37	경상남도					
2	"	"	137-2	도	483.0	47	농림축산 식품부					
3	"	"	139	답	457.0	457	사천시					
4	1/	"	139-1	답	861.0	861	이*임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				
5	"	"	139-2	도	181.0	148	사천시					
6	1/	1/	139-3	도	83.0	81	사천시					
7	11	"	139-4	답	40.0	37	경상남도					
8	"	"	139-5	답	31.0	4	경상남도					
9	4	1/	258	천	70,539.0	27	국토 교통부					
3) 🌣	수마을	둘레길	조성			1,085						
1	정동	예수	754	구	6959	370	농림축산 식품부					
2	1/	4	180-3	답	1,573	327	사천시					
3	1/	4	180-4	답	142	142	사천시					
4	4	′/	181-6	대	443	57	사천시					
5	11	"	181-8	답	152	152	사천시					
6	1/	4	180-9	도	37	37	사천시					

나. 물건조서

일련		소유권 이외 보건의 구조 및 면적 및 보다	우권 이외의 권리]명세							
보인 번호	소재지	지번	종류	기조 뜻 규격	전역 롯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2.3			0 11	= 7	1 6	10.0	72	10.0	73	및 내용	
1	정동면	656-2	업무 및	조립식	320 m²	수청 마을	사천시 정동면				보상
	대곡리	636-2	창고시설	SET	320111	회	수청리 **				완료

9.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지역개발부(055-851-81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제 757호

사천시 고시 제2021-370호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1-197(2021.07.22.)호로 시행계획 변경 고시된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8,00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가. 시행계획 변경 내용

사업	세부사업	사이게 이	사업비(백만원)	비고
분야	세구/[집	사업개요	시행계획 (변경전)	시행계획 (변경후)	1 H
	합 계		8,000.0	8,000	
기초	2 생활기반확충		3,709.4	4,359	
	사천활력어울림센터	농산물판매장, 강의실, 다 어울림교육실 등	3,500.0	4,086	구시매립미 공가
	다목적 두레장터 조성	주차장(38면), 조경식재 등	209.4	273	

^ 1 천 시 공 보

제 757호

사업	al Hali Al	n ol all o	사업비(백만원)	비고
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시행계획 (변경전)	시행계획 (변경후)	미끄
지역	경관개선		2,231.0	1,570	
	지역공동체 놀이터 조성	어린이정원, 산책로정비 등	960.0	871	포장구간 감
	Wing-Wing특화거리 조성	정의1길, 읍내로 정비	1,271.0	699	사업구간 축소
지 역	역량강화		920.8	774	
	ग न्द	주민/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335	227	
	홍보미케팅	McFood 페스티벌 개최 등	85	150	
	컨설팅	커뮤니티 경관디자인 등	188	231	
	정보화	스마트 두레공동체 앱 개발 등	23	23	
	마을경영지원	창업지원, 센터운영지원, 회의비 등	289.8	143	
부	대 비 용	기본 및 실시 설계, 사업 관리비 등	1,138.8	1,297	

-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위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일 련	소지	재지			편입면	적(m²)	ć	소유자	Ž	쇼유권 이 권리명∕		
번 번 호	ᅌ	리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합 계			57,991						
1) 사	-천활력0] 울림센터	로 조성			1,845						
1	사천	정의	401-13	대	264	264	최**외 7	사천읍 정의*길** 외				
2	"	"	401-14	대	91	91	사천시					매입
3	"	"	401-15	대	258	258	백**	사천읍 정의*길**				
4	4	"	401-21	대	110	110	김**	사천읍 정의*길**				
5	4	"	401-32	대	25	25	백**	사천읍 정의*길**				
6	1/	4	402-1	대	74	74	하**	정동면 쇠실*길**				
7	사천	정의	401-10	대	228	228	사천시					
8	′/	′/	401-11	대	105	105	사천시					
9	′/	"	401-12	대	622	622	사천시					
10	4	"	401-34	대	6	6	사천시					
11	4	"	401-36	대	62	62	사천시					
2) 다	목적두리	장터 조	성			1,288						
1	사천	정의	389-47	대	34	34	사천시					
2	4	"	389-6	대	139	139	사천시					
3	"	"	389-8	대	149	149	사천시					
4	4	′,	396-1	대	93	93	기재부					
5	4	"	396-2	대	17	17	사천시					매입
6	"	"	396-28	대	165	165	기재부					
7	′/	"	396-29	대	112	112	기재부					
8	′/	"	396-30	대	5	5	기재부					
9	"	"	401-27	대	44	44	사천시					
10	"	"	401-33	대	70	70	사천시					
11	"	"	401-37	대	39	39	사천시					
12	′/	"	401-38	대	4	4	사천시					
13	′/	"	401-7	대	157	157	사천시					
14	′/	"	401-8	대	73	73	사천시					
15	11	"	401-9	대	187	187	사천시					

3) 지	역공동체	놀이터(수양공원) 2	조성		47,881				
1	사천	정의	175	전	480	480	사천시			
2	"	"	177	전	635	635	사천시			
3	"	"	211	대	364	364	사천시			
4	"	"	213	공	146	146	사천시			
5	"	"	218	공	175	175	사천시			
6	/	//	167-10	도	609	609	사천시		 	
7	사천	정의	167-11	도	120	120	사천시			
8	"	"	167-4	도	85	85	사천시			
9	"	"	167-5	전	40	40	사천시			
10	"	"	174-1	전	601	601	사천시			
11	"	"	174-2	도	69	69	사천시			
12	"	"	178-1	전	1,053	1,053	사천시			
13	"	"	180-5	공	80	80	사천시			
14	"	"	210-1	공	1,117	1,117	사천시			
15	"	"	210-15	공	99	99	사천시			
16	′,	"	210-18	공	123	123	사천시			
17	′,	"	210-2	공	807	807	사천시			
18	"	"	210-20	공	27	27	사천시			
19	"	"	210-3	공	443	443	사천시			
20	′/	"	210-4	공	776	776	사천시			
21	′/	"	210-6	공	256	256	사천시			
22	"	"	210-9	공	63	63	사천시			
23	′/	"	212-1	공	14,218	14,218	사천시			
24	"	"	214-1	공	147	147	사천시			
25	"	"	214-2	공	510	510	사천시			
26	′/	"	214-3	공	65	65	사천시			
27	"	"	214-4	공	138	138	사천시			
28	′	′	219-1	공	154	154	사천시			
29	"	"	219-2	공	265	265	사천시			
30	′	"	219-3	공	246	246	사천시			
31	"	"	219-4	공	21	21	사천시			
32	"	"	219-5	공	37	37	사천시			

일	소지	내지			편입면	[적(m²)		소유자	3	노유권 이 권리명		
편 번 호	음	리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33	사천	정의	219-6	공	23	23	사천시					
34	′/	"	219-7	공	34	34	사천시					
35	′/	선인	501	공	685	685	사천시					
36	11	11	502	공	774	774	사천시					
37	11	11	503	공	645	645	사천시					
38	11	11	506	공	939	939	사천시					
39	′/	"	581	대	419	419	사천시					
40	′/	4	582	공	1,025	1,025	사천시					
41	′/	"	583	공	737	737	사천시					
42	11	11	606	공	152	152	사천시					
43	′/	"	579-1	공	678	678	사천시					
44	11	11	579-2	대	592	592	사천시					
45	'/	"	579-5	사	3,108	3,108	사천시					
46	11	11	579-6	공	855	855	사천시					
47	"	"	579-7	대	188	188	사천시					
48	"	"	580-2	사	12,965	12,965	사천시					
49	'/	11	581-1	대	93	93	사천시					
4) W	ing-Wing	g특화거리	1			6,977			I	I	I	
1	사천	수석	252-3	도	3,692	488	국토부					읍내로
2	4	"	251-14	대	60	1	김**	진주시 망경동**				
3	4	"	251-15	대	796	9	허**	사천읍 수석리**		축산업 ·조합	근저당권	
4	"	"	253-10	도	149	136	사천시					
5	"	"	251-5	대	10	5	국토부					
6	′/	"	251-2	도	298	298	사천시					
7	"	"	251-7	도	11	11	국토부					
8	"	"	761-35	도	8,309	91	국토부					

일	소~	내지			편입면	적(m²)	2	소유자	3	도유권 이 권리명		
편 번 호	이끄	리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9	사천	수석	236-4	도	82	82	국토부					
10	4	1	234-2	도	45	28	사천시					
11	4	11	237-2	도	7	7	국토부					
12	′/	1/	225-2	도	665	600	국토부					
13	′/	1/	761-16	도	26	1	국토부					
14	′/	4	222-2	전	9	2	사천시					
15	′/	<i>y</i>	233-1	도	814	460	사천시					
16	′/	4	230-2	도	88	83	국					
17	1/	1/	230-7	도	26	15	국토부					
18	4	정의	436	도	399	397	국토부					
19	4	1/	431	대	73	1	신**	사천읍 정의리**				
20	4	1/	436-1	도	40	2	기재부					
21	′/	1/	433	잡	56	7	사천시					
22	′/	1/	434	잡	10	4	천**	사천읍 선인리**				
23	4	"	435	잡	2	2	국토부					
24	4	4	435-1	대	3	2	영화**	진주시 상봉동**				
25	1/	"	394-76	대	92	1	이** 외 2	사천읍 정의리** 외				
26	′/	"	390-3	도	1,158	566	사천시					
27	"	"	393-4	도	225	221	국토부					
28	"	4	390-10	대	86	3	<u>Q</u> **	사천읍 정의리**				
29	4	"	390-12	대	69	1	이**외 1	사천읍 정의리** 외	삼천포 협동	축산업 조합	근저당권	1/2
30	′/	"	415-13	도	221	7	국토부					
31	4	4	416	구	664	8	농식품부					
32	1/	"	360-2	도	129	128	사천시					
33	4	1	359-1	도	36	36	0]**	사천읍 평화동**				
34	'n	"	357-8	도	56	54	국토부					
35	4	4	334-2	도	212	206	국토부					

일	소지	대기			편입면	년적(㎡)	5	소유자	3	소유권 이 권리명		
편 번 호	습	리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36	사천	정의	325-1	도	23	23	기재부					
37	4	"	336-5	도	165	165	사천시					
38	"	"	336-3	도	96	96	국토부					
39	"	"	321-1	도	69	69	사천시					
40	′/	"	419	구	161	14	기재부					
41	"	"	418	도	65	8	국토부					
42	4	"	320-2	도	110	82	사천시					
43	4	"	338-1	대	10	10	0]**	서울특별시 도곡동**	경남	은행	근저당권	
44	사천	평화	201-7	도	85	85	국토부					
45	4	"	43-15	도	1	1	사천시					
46	′/	11	43-6	도	3	3	사천시					
47	4	"	43-1	대	3	3	0]**	사천읍 평화동**				
48	1/	"	43-2	도	14	14	사천시					
49	′/	"	197-20	도	44	43	국토부					
50	4	"	247-5	도	415	169	사천시					
51	4	"	247-4	도	361	99	사천시					
52	4	"	247-6	도	10	10	국토부					
53	′/	4	252	대	61	6	0]**	부산광역시 황령대로**				
54	4	"	197-1	구	708	3	국토부					
55	′/	정의	389-3	도	694	694	국토부					정의1길
56	"	"	390-3	도	1,158	380	사천시			·		
57	′/	"	401-2	도	512	512	사천시					
58	′/	"	404-2	도	453	453	사천시					
59	′/	"	410-2	도	258	102	국토부					
60	4	"	415-15	도	1,887	20	국토부					

나. 물건조서

V) 24			및 z) o)		마 기	:	소유자	소-	유권 이외의 국	년리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사천읍 정의리	401-13	근린생활 시설	블럭조강판지붕 (12*7)	84	최**	사천읍 정의*길**				
2	"	"	주택	블럭조스레트 (11*4)	44	"	"				
3	"	"	창고	블럭조스레트 (3*4)	12	"	n,				
4	"	"	창고 및 화장실	블럭조스레트 (5*4)	20	"	"				
5	"	"	가추	철파이프조스레트 (11*1)	11	"	"				
6	"	"	수도		1	"	"				
7	"	"	영업보상	공간연출 시설이전비	1	"	"				
8	"	"	영업보상	도심원 시설이전비 등	1	0]**	사천읍 정의*길**				
9	"	401-14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	77.02	정**	사천읍 수양로**				
10	"	"	수도		1	"	"				
11	"	"	영업보상	막창&뒷고기	1	김**	사천읍 정의*길**				
12	"	n,	시설 이전비 등	주방시설 및 영업시설일체 등	1	"	n.				
13	"	"	간판	1*2, 2*4	2	"	n,				
14	"	401-15	주택1층	철근콘크리트	121.77	백**	사천읍 정의*길**				
15	"	"	주택2층	철근콘크리트	56.65	"	n,				
16	"	"	대문1	철재(3*2) 적벽문주2	1	"	"				
17	"	"	대문2	샷시조(1*2)	1	"	n,				
18	"	"	태양광 설비		1	"	"				
19	"	"	수조	콘크리트조(1*3*1)	1	"	n,				
20	"	"	다용도실	판넬조판넬(7*2)	14	"	"				
21	"	<i>"</i>	바닥	콘크리트(5*10*1/2)	25	"	"				
22	"	"	가추	철파이프강판지붕 (1.5*2)	3	"	"				
23	"	"	화단1	블럭조(5*1)	1	"	"				
24	"	"	화단2	2*8	1	"	"				
25	"	"	수도		1	"	"				
26	"	"	은목서	R20	2	"	"				

일련			물건의		면적		소유자	소유	구권 이외의 ⁻	권리명세	
번호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및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27	사천읍 정의리	401-15	동백나무	R10	1	백**	사천읍 정의*길**				
28	"	"	동백나무	R7	2	"	"			***************************************	
29	"	"	나무수국	R7	1	"	n				
30	"	"	자목련	R7	2	"	"				
31	"	"	사철나무	R20	1	"	"				
32	"	"	사철나무	R5	1	"	"				
33	"	"	철쭉	H1.5, W1.5	9	"	"				
34	"	"	수국		1	"	"				
35	"	"	꽃치자 나무	H1.5	1	"	"				
36	"	"	목단		1	"	"				
37	"	"	기타화분		20	"	"				
38	"	401-21	근린생활 시설	블럭조 스레트위 강판	28.43	김**	사천읍 정의*길**				
39	"	"	주택	블럭조스레트	28	"	"				
40	"	"	주택	블럭조스레트	21	"	"				
41	"	"	창고 및 화장실	블럭조스레트	8	"	"				
42	"	"	계단	콘크리트	1	"	"				
43	"	"	수도		1	<i>"</i>	"				
44	"	"	대문	철재 슬라브	1	"	"				
45	"	402-1	근린생활 시설	경량철골구조	30.24	하**	정동면 쇠실*길**				
46	"	"	주택	블럭조스라브(5*4)	20	"	n				
47	"	n,	보일러실	블럭조스레트(1.5*2)	3	"	n				
48	"	"	화장실	블럭조스라브(1*1)	1	<i>"</i>	"				
49	"	"	물탱크	FRP및콘크리트	1	<i>"</i>	"				
50	"	"	가추	스레트(5*2)	10	<i>"</i>	"				
51	"	"	계단	콘크리트(5*1)	1	<i>"</i>	"				

일련			물건의		면적	3	소유자	소유	⊦권 이외의 ·	권리명세	
번호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및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52	사천읍 정의리	402-1	대문	샷시조(3*2)	1	항**	정동면 쇠실*길**				
53	"	"	수도		1	"	"				
54	"	"	바닥	콘크리트(5*5)	25	"	"				
55	"	"	영업보상	현대장식	1	"	"				
56	"	"	시설 이전비 등	재고자산 및 영업시설일체 등	1	"	"				
57	"	"	간판	1*2	2	"	"				
58	"	401-12	점포1	블럭조스레트 및 강판지붕(5*5)	25	강**	사천읍 정의*길**				
59	"	"	점포2	블럭조강판지붕(6*3)	18	"	"				
60	"	"	영업보상	한성상회	1	"	"				
61	"	"	시설 이전비 등	고추분쇄기 외 기계시설일체	1	"	"				
62	"	"	전기시설	8KW	1	"	"				
63	"	"	사무실	판넬조(1*2)	2	"	"				
64	"	"	가추	철파이프조 강판지붕(6*4)	24	"	"				
65	"	"	간판	5*1	1	"	"				
66	"	"	점포3	블럭조강판지붕(4*4)	16	차**	사천읍 정의*길**				
67	"	"	점포4	블럭조스레트(3*7)	21	"	"				
68	"	"	점포5	블럭조스레트(3*6)	18	"	"				
69	"	"	영업보상	성민상회	1	"	"				
70	"	"	시설 이전비 등	고추분쇄기 외 기계시설일체	1	"	"				
71	"	"	가추1	강판지붕 (15*(5+3)*1/2)	60	"	"				
72	"	"	가추2	천막(접이식) (7*1)	7	"	"				
73	"	"	냉동고	판넬조(6*2)	12	"	"				
74	"	"	전기시설1	7KW	1	"	"				
75	"	"	전기시설2	4KW	1	"	"				
76	"	"	간판	5*1	1	"	"				

제 757호

- 8. 본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 법령 의제 사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1) 교통시설
 - ①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조서
 - 주차장 결정(폐지)조서

7.11	구분 도면표시 시설트		위치		면적(m²)		최 초	비고
一一七	번 호	기결정	ガベ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미끄
폐지	4	주차장	사천읍 수석리 401-10번지 일원	1,165	감) 1,165	-	사천시 고시 제2004-25호 (2004.06.17.)	

■ 주차장 결정(폐지)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주차장	주차장 폐지	O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원으로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401-10번지 일원에 사천 활력거점센터를 건립 하고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코자 함

(2) 공간시설

①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공원명	면적(m²) 당원명 개념 위치			최 초	비고		
一一七	번 호	ठ स उ	세분	חי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北
변경	2	수양공원	근린공원	사천읍 정의리 일원	75,511	-	75,511	1966.10.18 건설부고시 제2882호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수양공원	조성계획 변경	○ 수양공원 내 공원시설의 조성현황을 반영하고 조성된 세부시설의 결정을 변경코자 함.

제 757호

②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조성계획총괄표

	시설면	적 (m²)	구성티	리 (%)		건축	면적		
시설의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	·면적	연민	변적	비고
	/1/8	1278	7178	건/8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 원 면 적	75,511	75,511	100	100	288.90	288.90	429.72	429.72	-
시 설 면 적	19,684	21,236	26.1	28.1	288.90	288.90	429.72	429.72	증1,552
도 로 및 광 장	6,271	6,961	8.3	9.2	_	-	-	-	증690
조 경 시 설	3,754	3,648	5.0	4.9	_	-	-	-	감106
휴 양 시 설	1,424	1,446	1.9	1.9	-	-	-	-	중22
유 희 시 설	-	976	-	1.3	-	-	-	-	중976
운 동 시 설	1,208	1,076	1.6	1.4	-	-	-	-	감132
교 양 시 설	4,543	4,619	6.0	6.1	165.94	165.94	366.76	366.76	증76
편 익 시 설	879	905	1.2	1.2	62.96	62.96	62.96	62.96	증26
공 원 관 리 시 설	1,605	1,605	2.1	2.1	_	_	-	-	-
녹 지 및 기 타	55,827	54,275	73.9	71.9	-	-	-	-	감1,552

■ 시설조서

1) 시설별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및 광장

Г	구분			시설면	시설면적 (m²)		건축	면적		,
			위치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1/8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도로및광장			6,271	6,961	-	-	-	-	증690
		도로		5,777	6,495	-	-	-	-	증718
	1	광장	선인리 583	494	466	-	-	-	-	감28

나) 조경시설

	그. 범			시설면	적 (m²)		건축	면적		_
1		구분	위치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u> </u>				/1/8	건/8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조경시설			3,754	3,648	-	-	-	-	감106
	2	잔디광장	정의리212-2	1,608	1,608	-	-	-	-	-
	3	분수대	선인리582	319	323	-	-	-	-	증4
	4	연못1	선인리579-1	660	637	-	-	-	-	감23
	5	연못2	선인리579-6	746	634	-	-	-	-	감112
	6	화훼원	선인리503	421	446	-	-	-	-	증25

제757호

다) 휴양시설

	구분			시설면적 (m²)			건축			
			위치	기정	변경	바닥	바닥면적		변적	비고
				7178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휴양시설			1,424	1,446	-	-	-	-	중22
	7	전망쉼터	정의리212-1	361	369	-	-	-	-	증8
	8	휴게쉼터1	정의리150	949	955	-	-	-	-	증6
	9	휴게쉼터2	선인리580-2	114	122	-	-	-	-	증8

라) 유희시설

	구분			시설면적 (m²)						
			위치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1/8	1.0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유희시설		-	976	-	-	-	1	증976
	22	어린이놀이터	정의리150	-	976	-	-	-	-	증976 신설

마) 운동시설

	구분			시설면	적 (m²)		건축면적				
			위치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7178	U/0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운동시설		1,208	1,076	-	-	-	-	감132	
	10	게이트볼장	선인리579-2	1,208	1,076	-	-	-	-	감132	

^1 천 시 공 보

제757호

바) 교양시설

			시설면	적 (m²)					
	구분	위치 기정		변경	바닥	바닥면적		변적	비고
			7178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교양시설			4,543	4,619	165.94	165.94	366.76	366.76	증76
11	침오정	선인리581-1	1,411	1,480	66.94	66.94	267.76	267.76	증69
12	수양루	선인리580-2	326	326	54	54	54	54	-
13	야외무대	선인리580-2	422	422	-	-	-	-	-
14	생태학습장	선인리503	2,339	2,346	-	-	-	-	증7
15	사적비	선인리580-2	45	45	45	45	45	45	-

사) 편익시설

	구분			시설면적 (m²)						
			위치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1/8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편익시설			879	905	62.96	62.96	62.96	62.96	증26
	16	주차장	선인리614-1	710	710	-	-	-	-	-
	17	화장실1	선인리580-2	130	156	36.96	36.96	36.96	36.96	중26
	18	화장실2	정의리212-1	39	39	26	26	26	26	-

아) 공원관리시설

				시설면	적 (m²)		건축	면적		
	구분		위치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1/8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	·원관리시설		1,605	1,605	-	-	-	-	-
	19 배수지		정의리148-2	1,605	1,605	-	-	-	-	-

^1 천 시 공 보

제757호

자) 녹지 및 기타

			시설면	적 (m²)		건축	면적		
	구분	위치	-1 -1	પ્રો અ	바닥	·면적	연단	<u>변</u>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녹	지 및 기타		55,827	54,275	-	-	-	-	감1,552
20	유보지	선인리172	1,210	1,210	-	-	-	-	-
21-1	녹지1	정의리175	20,324	20,389	-	-	-	-	증65
21-2	녹지2	선인리583	4,946	4,946	-	-	-	-	-
21-3	녹지3	정의리212-1	3,824	3,785	-	-	-	-	감39
21-4	녹지4	선인리506	3,437	3,459	-	-	-	-	증22
21-5	녹지5	선인리212-1	6,033	2,446	-	-	-	-	감3,587
21-6	녹지6	선인리212-1	2,924	2,924	-	-	-	-	-
21-7	녹지7	선인리212-1	1,284	1,284	-	-	-	-	-
21-8	녹지8	선인리212-1	1,622	1,622	-	-	-	-	-
21-9	녹지9	선인리212-1	1,685	1,757	-	-	-	-	증72
21-10	녹지10	선인리580-2	3,007	3,140	-	-	-	-	증133
21-11	녹지11	선인리579-5	4,283	3,502	-	-	-	-	감781
21-12	녹지12	선인리580-2	444	538	-	-	-	-	증94
21-13	녹지13	선인리580-2	804	924	-	-	-	-	증120
21-14	녹지14	정의리214-2	-	2,349	-	-	-	-	증2,349 신설

^ 1 천 시 공 보

제757호

2)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능	시점	종점	비고
7]:	정		소계		1,582	5,777				
변2	경		소계		1,927	6,495				
기정	소로	3	1	4	306	1,506	산책로	구역계	광장	-
변경	소로	3	1	5	460	2,248	산책로	구역계	광장	-
기정	소로	3	2	3	113	652	산책로	구역계	광장	-
변경	소로	3	2	4	163	681	산책로	구역계	광장	-
기정	소로	3	3	4	68	276	산책로	주차장	광장	-
기정	소로	3	4	5	201	1,114	산책로	게이트볼장	소로32	-
변경	소로	3	4	4	260	1,040	산책로	게이트볼장	소로32	-
기정	소로	3	5	5	116	595	산책로	구역계	광장	-
기정	소로	3	6	3	86	253	산책로	소로3-2	화훼원	-
변경	소로	3	6	2.5	144	361	산책로	소로3-2	소로3-4	-
기정	소로	3	7	4	56	224	산책로	구역계	잔디광장	-
변경	소로	3	7	4	58	232	산책로	소로3-2	잔디광장	-
기정	소로	3	8	3	82	249	산책로	잔디광장	소로3-2	-
변경	소로	3	8	2	83	175	산책로	잔디광장	소로3-2	-
기정	소로	3	9	2	108	215	산책로	잔디광장	전망쉼터	-
기정	소로	3	10	2	50	109	산책로	소로3-2	잔디광장	-
변경	소로	3	10	2	56	112	산책로	소로3-2	잔디광장	-
기정	소로	3	11	1.5	33	78	산책로	소로3-6	소로3-2	-
변경	소로	3	11	1.1	33	37	산책로	소로3-6	소로3-2	-
기정	소로	3	12	1.2	116	151	산책로	소로3-7	소로3-9	-
기정	소로	3	13	1.2	80	104	산책로	소로3-7	소로3-12	-
기정	소로	3	14	1.5	167	251	산책로	소로3-12	전망쉼터	-
변경	소로	3	15	1.1	15	17	산책로	게이트볼장	소로3-6	신설

제 757호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 (1) 도시계획시설(도로:읍내로) 실시계획인가
- ① 사업의 위치
 -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52-3번지 ~ 정의리 320-2번지 일원
-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시행계획수립 특화거리(읍내로) 조성
- ③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 : 4,866 m²
- ④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남도 사천시장
 -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⑤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공 : 준공일까지

제 757호

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지적	(m²)		소 유 자	소유국	면 이외의 권	리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1	사천읍 수석리	252-3	도	3,692	488	국토교통부				
2	사천읍 수석리	251-14	대	60	1	김**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 <u>-</u> *			
3	사천읍 수석리	251-15	대	796	9	허**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	사천 삼천포 축산업 협동조합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	근저당권
4	사천읍 수석리	253-10	도	149	136	사천시				
5	사천읍 수석리	251-5	대	10	5	국토교통부				
6	사천읍 수석리	251-2	도	298	298	사천시				
7	사천읍 수석리	251-7	도	11	11	국토교통부				
8	사천읍 수석리	761-35	노	8,309	91	국토교통부				
9	사천읍 수석리	236-4	도	82	82	국토교통부				
10	사천읍 수석리	234-2	도	45	28	사천시				
11	사천읍 수석리	237-2	도	7	7	국토교통부				
12	사천읍 수석리	225-2	도	665	600	국토교통부				
13	사천읍 수석리	761-16	도	26	1	국토교통부				
14	사천읍 수석리	222-2	전	9	2	사천시				
15	사천읍 수석리	233-1	도	814	460	사천시				
16	사천읍 수석리	230-2	도	88	83	국				
17	사천읍 수석리	230-7	도	26	15	국토교통부				
18	사천읍 정의리	436	도	399	397	국토교통부				
19	사천읍 정의리	431	대	73	1	신**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20	사천읍 정의리	436-1	도	40	2	기획재정부				
21	사천읍 정의리	433	잡	56	7	사천시				
22	사천읍 정의리	434	잡	10	4	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 신진아파트가동 ***호			
23	사천읍 정의리	435	잡	2	2	국토교통부				
24	사천읍 정의리	435-1	대	3	2	**흥업 주식회사	진주시 상봉동 ***			
25	사천읍 정의리	394-76	대	92	1	0]**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0]**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동 ****호 모종동,한라동백아파트			
						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 ***호한빛타운			

^ 1 천 시 공 보

제757호

				지적	(m²)		소 유 자	소유국	권 이외의 권리	비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 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26	사천읍 정의리	390-3	도	1,158	566	사천시				
27	사천읍 정의리	393-4	도	225	221	국토교통부				
28	사천읍 정의리	390-10	대	86	3	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29	사천읍 정의리	390-12	대	69	1	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남한맨션가-***	사천 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근저당권
						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남한맨션 나-***			
30	사천읍 정의리	415-13	도	221	7	국토교통부				
31	사천읍 정의리	416	구	664	8	농림축산식 품부				
32	사천읍 정의리	360-2	도	129	128	사천시				
33	사천읍 정의리	359-1	도	36	36	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			
34	사천읍 정의리	357-8	도	56	54	국토교통부	, - 2			
35	사천읍 정의리	334-2	도	212	206	국토교통부				
36	사천읍 정의리	325-1	도	23	23	기획재정부				
37	사천읍 정의리	336-5	도	165	165	사천시				
38	사천읍 정의리	336-3	도	96	96	국토교통부				
39	사천읍 정의리	321-1	도	69	69	사천시				
40	사천읍 정의리	419	구	161	14	기획재정부				
41	사천읍 정의리	418	도	65	8	국토교통부				
42	사천읍 정의리	320-2	도	110	82	사천시				
43	사천읍 정의리	338-1	대	10	10	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우성캐릭터****-****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3.15 대로 *** 석전동, 사천지점	근저당권
44	사천읍 평화리	201-7	도	85	85	국토교통부				
45	사천읍 평화리	43-15	도	1	1	사천시				
46	사천읍 평화리	43-6	도	3	3	사천시				
47	사천읍 평화리	43-1	대	3	3	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 **			
48	사천읍 평화리	43-2	도	14	14	사천시				
49	사천읍 평화리	197-20	도	44	43	국토교통부				
50	사천읍 평화리	247-5	도	415	169	사천시				
51	사천읍 평화리	247-4	도	361	99	사천시				
52	사천읍 평화리	247-6	도	10	10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남구			
53	사천읍 평화리	252	대	61	6	0]**	무산당역시 담구 황령대로***번길**, ***동****호(대연동,대연 경동메르빌아파트)			
54	사천읍 평화리	197-1	구	708	3	국토교통부	·			

제 757호

- (2)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실시계획인가
 - ① 사업의 위치
 -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401-9번지 일원
 -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사업
 - 명칭 :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시행계획수립 다목적두레장터 조성
 - ③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 : 1,245m²
 - ④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남도 사천시장
 -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⑤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공 : 준공일까지

^ 1 천 시 공 보

제 757호

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지조	(m²)		소 유 자	소유권	면 이외의 권리	l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 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1	사천읍 정의리	389-6	대	139	139	사천시				
2	사천읍 정의리	389-8	대	149	149	사천시				
3	사천읍 정의리	389-47	대	34	34	사천시				
4	사천읍 정의리	396-1	대	93	93	기획재정부				
5	사천읍 정의리	396-2	대	17	11	우**	사천군 사천읍 수석리 ***-**			
					6	사천시				
6	사천읍 정의리	396-28	대	165	165	기획재정부				
7	사천읍 정의리	396-29	대	112	112	기획재정부				
8	사천읍 정의리	396-30	대	5	5	기획재정부				
9	사천읍 정의리	401-7	대	157	157	사천시				
10	사천읍 정의리	401-8	대	73	58	사천시				
					15	김**	사천군 사천읍 정의리 ***			
11	사천읍 정의리	401-9	대	187	187	사천시				
12	사천읍 정의리	401-27	대	44	44	사천시				
13	사천읍 정의리	401-33	대	70	70	사천시				

9.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지역개발부(055-851-81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제 757호

사천시 고시 제2021-372호

소하천 정비 완료 고시

사천시에서 시행한 "목곡소하천 정비사업", "학촌소하천 정비사업", "문화소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되어「소하천정비법」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완료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장

1. 소하천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 개	ይ				
소하천		공사	위치		사업량(m)	ı	공사	·기간		비고
명	공사명	시작하는	끝나는	축제	호안	ગોનો	ラレコ	スコ	공사 목적	
		지점	지점	(築堤)	(護岸)	기타	착공	준공		
학혼천	학존소하천 정비공사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31-1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74	1,020	1,020	교량 9개소	2016. 4.6.	2020. 5.29.	2 크리싱 카메이	
목곡천	목곡소하천 정비공사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98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85	1,365	1,365	교량 12개소	2017. 2.27.	2020. 7.9.	소하천의 정비와 - 관리보전을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문화천	문화소하천 정비공사	사천시 신벽동 425-4	사천시 송포동 608-2	1,749	1,749	교량 3개소	2018. 11.9.	2021. 11.7.		

2.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사천시장(건설과)

나. 주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제757호

- 4.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1천500분의 1이상 지적이 표시된 도면)
 - 게재 생략
 - ※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건설과(☎055-831-3271)에 비치
- 5. 준공된 소하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청인 사천시장(건설과)이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 관리

■ 토지 세목 조서(목곡소하천)

_	소	재	지		_	대장	편입	
구분	시,군	읍,면	리	지 번	지 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1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95-3	답	49	49	사천시
2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98	도	1319	658	국)농림축산식품부
3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46-1	천	1232	69	경상남도
4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95-2	답	201	201	사천시
5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46-2	답	35	35	경상남도
6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47-3	답	79	79	사천시
7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48-5	답	101	101	사천시
8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96-1	답	204	204	사천시
9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48-6	답	24	24	사천시
10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51-1	답	122	122	사천시
11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99	구	9469	1892	국)농림축산식품부
12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52-3	답	224	224	사천시
13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97-1	답	125	125	사천시
14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53	도	1372	599	국)농림축산식품부
15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55-5	답	52	52	사천시
16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55-6	답	136	136	사천시
17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56-4	답	81	81	사천시
18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27-1	답	49	49	사천시
19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628-5	구	15005	7154	국)농림축산식품부
20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27-2	답	17	17	사천시
21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34-1	답	32	32	사천시
22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34-2	답	24	24	사천시
23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36-1	답	23	23	사천시
24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37-1	답	45	45	사천시
25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38-1	답	7	7	사천시
26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39-3	답	54	54	사천시
27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39-2	구	83	83	사천시
28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644	도	112	23	국)국토교통부
29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19	도	614	614	국)농림축산식품부
30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140	답	1420	1420	사천시
		소계				32,310	14,196	

7 13	소	재	지	ગ ો મો	-J) [2	대장	편입	시대
구분	시,군	읍,면	리	기 번	지 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31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20	구	80	72	국)농림축산식품부
32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22-2	답	49	49	사천시
33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22-1	구	134	134	사천시
34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58-1	구	15	15	사천시
35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58-2	답	15	15	사천시
36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18	답	1432	1432	사천시
37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62-1	답	127	127	사천시
38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63-1	답	43	43	사천시
39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65	구	43	43	국)농림축산식품부
40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18-1	답	3	3	사천시
41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17	구	956	38	국)농림축산식품부
42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64-2	답	163	163	사천시
43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64-1	도	266	39	사천시
44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56-1	도	51	18	사천시
45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55-2	도	110	42	국)농림축산식품부
46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626-5	도	105	105	사천시
47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55-1	대	342	342	사천시
48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71-3	답	28	28	사천시
49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71-1	답	42	42	사천시
50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76	도	1287	1,268	국)국토교통부
51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72-8	대	157	157	사천시
52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72-7	답	153	153	사천시
53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74-1	도	255	255	사천시
54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74-2	답	51	51	사천시
55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77	구	2789	9	사천시
56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87-2	답	21	21	국)농림축산식품부
57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75	도	296	296	사천시
58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80-2	답	25	25	사천시
59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626-8	도	81	16	국)농림축산식품부
60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75-3	도	115	115	사천시
61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75-4	답	29	29	사천시
	소계					9,263	5,145	

구분	소	재	지	기 번	지 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 -	시,군	읍,면	리		' '	(m²)	(m²)	0 0
62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81-1	도	143	143	사천시
63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81-2	답	21	21	사천시 외 1인
64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82-1	도	39	39	사천시
65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82-2	답	6	6	사천시
66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85-2	답	10	10	사천시
67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88-1	답	222	222	사천시
68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85-1	도	613	613	사천시
69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92-1	답	177	177	사천시
70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93-1	답	57	57	사천시
71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94-1	답	60	60	사천시
72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95-6	답	66	66	사천시
73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95-7	답	164	164	사천시
74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22	구	312	263	국)농림축산식품부
75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95-8	답	161	161	사천시
76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25-22	답	75	75	사천시
77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95-9	답	125	125	사천시
78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25-23	답	62	62	사천시
79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25-24	답	124	124	사천시
80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95-10	답	240	240	사천시
81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25-25	답	122	122	사천시
82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96	구	2349	682	국)농림축산식품부
83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25-26	답	105	105	사천시
84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25-27	답	108	108	사천시
85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615-2	도	488	111	국)국토교통부
86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25-28	답	69	69	사천시
87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25-29	답	76	76	사천시
88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27	구	196	196	국)농림축산식품부
89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25-30	답	263	263	사천시
90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60-24	답	49	49	사천시
91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60-25	답	2	2	사천시
92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57	구	933	283	국)농림축산식품부
	소계					7,437	4,694	

7 12	소	재	지	-1 v)	-) 11	대장	편입	ווע
구분	시,군	읍,면	리	지 번	지 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93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58	도	773	13	국)농림축산식품부
94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60-26	답	173	173	
95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60-14	답	16	16	사천시
96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60-15	답	40	40	사천시
97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산80-1	구	1025	1025	한국농어촌공사
98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60-16	답	29	29	사천시
99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60-17	답	23	23	사천시
100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60-18	답	43	43	사천시
101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60-19	답	22	22	사천시
102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60-20	답	17	17	사천시
103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60-21	답	26	26	사천시
104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60-22	답	20	20	
105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60-23	답	57	57	사천시
106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59	도	932	932	국)농림축산식품부
107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15	유	1045	99	사천시
108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85	구	2009	63	국)농림축산식품부
	소계					6,250	2,598	
	합계					55,260	26,633	

■ 토지 세목 조서(문화소하천)

	소	재 기			대장	편입	
구분	시,군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1	사천시	노룡동	927-15	도	243	243	사천시
2	사천시	노룡동	962	제	1,818	231	국(국토교통부)
3	사천시	노룡동	655-12	답	184	184	사천시
4	사천시	노룡동	958	천	4,998	2,752	국(국토교통부)
5	사천시	노룡동	561-8	답	107	107	사천시
6	사천시	노룡동	561-7	답	115	115	사천시
7	사천시	송포동	617-6	도	270	270	사천시
8	사천시	송포동	1501	제	426	232	국(국토교통부)
9	사천시	송포동	608-1	도	101	101	사천시
10	사천시	송포동	1500	천	2,929	1,726	국(국토교통부)
11	사천시	송포동	608-6	전	285	285	사천시
12	사천시	송포동	609-2	과	213	213	사천시
13	사천시	송포동	605-1	도	930	899	사천시
14	사천시	송포동	607-2	전	259	259	사천시
15	사천시	노룡동	557-1	답	59	59	사천시
16	사천시	노룡동	556-3	답	253	253	사천시
17	사천시	신벽동	562	천	267	267	국(국토교통부)
18	사천시	송포동	512-39	도	148	94	사천시
19	사천시	송포동	512-15	천	35	35	국(국토교통부)
20	사천시	송포동	606-2	전	114	114	사천시
21	사천시	송포동	605-5	전	250	250	사천시
22	사천시	송포동	605-4	전	186	75	사천시
23	사천시	송포동	605-2	도	40	19	사천시
24	사천시	송포동	1502	도	122	44	국(국토교통부)
25	사천시	송포동	512-20	도	60	19	사천시
26	사천시	송포동	512-41	전	284	284	사천시
27	사천시	송포동	512-42	전	261	261	사천시
28	사천시	송포동	512-43	전	162	162	사천시
29	사천시	송포동	512-44	답	72	72	사천시
30	사천시	송포동	512-45	답	95	95	사천시
	소계				15,286	9,720	

ЭН	소	재 지	-1 LU	-) II	대장	편입	al m
구분	시,군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31	사천시	송포동	512-46	답	12	12	사천시
32	사천시	송포동	512-47	답	87	87	사천시
33	사천시	송포동	514	답	542	484	사천시
34	사천시	신벽동	539-5	천	240	10	사천시
35	사천시	신벽동	562-2	천	1,104	78	국(국토교통부)
36	사천시	죽림동	804-2	답	12	12	사천시
37	사천시	죽림동	804-1	구	103	103	사천시
38	사천시	죽림동	805-3	구	527	527	사천시
39	사천시	죽림동	1055	구	14,692	2,984	국(농림축산식품부)
40	사천시	죽림동	801-3	구	157	157	사천시
41	사천시	죽림동	801-4	답	33	33	사천시
42	사천시	죽림동	801-1	도	100	100	사천시
43	사천시	죽림동	801-2	구	169	169	사천시
44	사천시	죽림동	800-11	도	29	29	사천시
45	사천시	죽림동	806	전	79	79	손이약
46	사천시	죽림동	790-2	답	16	16	하○순
47	사천시	죽림동	790-1	도	94	94	사천시
48	사천시	죽림동	1069	도	3,064	128	국(국토교통부)
49	사천시	송포동	510-1	천	299	83	사천시
50	사천시	죽림동	1084	도	1,230	10	국(국토교통부)
51	사천시	죽림동	805-5	답	260	260	사천시
52	사천시	죽림동	805-6	도	57	57	사천시
53	사천시	죽림동	805-7	답	142	142	사천시
54	사천시	죽림동	805-4	천	215	215	사천시
55	사천시	죽림동	807-11	답	29	29	사천시
56	사천시	죽림동	807-9	천	351	351	사천시
57	사천시	죽림동	807-10	답	12	12	사천시
58	사천시	죽림동	807-8	도	136	40	국(국토교통부)
59	사천시	죽림동	1085	도	99	99	국(국토교통부)
60	사천시	죽림동	827-4	답	454	454	사천시
61	사천시	죽림동	821-1	답	42	42	사천시
	소계				24,386	6,896	

- u	소	재 지	-1 vi	-) 11	대장	편입	11-2
구분	시,군	읍,면,동	지 번	지 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62	사천시	죽림동	824-12	답	203	203	사천시
63	사천시	죽림동	825-1	답	35	35	사천시
64	사천시	죽림동	722-1	답	212	212	사천시
65	사천시	죽림동	824-13	답	125	125	사천시
66	사천시	죽림동	723-1	답	163	163	사천시
67	사천시	죽림동	824-11	답	42	42	사천시
68	사천시	죽림동	720-2	수	119	119	국(국토교통부)
69	사천시	죽림동	720-1	수	110	11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외 1인
70	사천시	죽림동	682-9	답	241	241	국(기획재정부)
71	사천시	죽림동	682-33	답	578	578	사천시
72	사천시	죽림동	682-23	답	80	80	국(농림축산식품부)
73	사천시	죽림동	755-2	도	30	30	이○명
74	사천시	죽림동	755-1	임	83	83	박○호
75	사천시	죽림동	710-2	전	116	116	사천시
	소계			2,137	2,137		
	합계			41,809	18,753		

■ 토지 세목 조서(학촌소하천)

- u	소	재	지	-1 vi	-) 11	대장	편입	11-2
구분	시,군	읍,면	리	지 번	지 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1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32	천	2,649	2,649	국)농림축산식품부
2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33	도	1,881	11	국)농림축산식품부
3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64-6	대	90	61	사천시
4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64-9	대	1	1	사천시
5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64-8	대	41	41	사천시
6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90-1	도	414	230	국)건설부
7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64-10	대	25	25	사천시
8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64-3	도	129	76	사천시
9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66-5	도	41	41	정○규
10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66-3	대	25	25	사천시
11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66-4	대	6	6	사천시
12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66-6	대	159	159	사천시
13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67-4	전	13	13	사천시
14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67-3	창	55	55	사천시
15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76-6	과	298	298	사천시
16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75-1	과	174	174	사천시
17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73-1	대	158	158	사천시
18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92	도	2,274	16	국)건설부
19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8-3	전	79	79	사천시
20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8-4	도	30	30	사천시
21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9-3	도	20	20	사천시
22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49-5	대	116	116	사천시
23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9	답	83	83	사천시
24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13	대	15	15	사천시
25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12	대	6	6	사천시
26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11	도	11	11	사천시 외 1인
27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99	도	320	153	국)건설부
28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8-3	전	12	12	사천시
29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9-1	대	119	119	사천시 외 1인
30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7-3	대	8	8	사천시
	소계					9,252	4,691	

7 13	소	재	지	기 번	7) E	대장	편입	서대
구분	시,군	읍,면	리] 시 민	지 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31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8-2	전	44	44	사천시
32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8-1	전	56	56	사천시
33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7-1	대	336	336	사천시
34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5	대	605	605	사천시
35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4-1	도	23	23	사천시
36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4-5	전	79	79	사천시
37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4-7	답	95	95	사천시
38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5	도	238	238	사천시
39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3-10	전	269	269	사천시
40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99-2	도	123	123	국)건설부
41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55	도	66	66	주○태
42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54-2	전	7	7	사천시
43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56-1	전	53	53	사천시
44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57-1	전	124	124	사천시
45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61-2	도	43	43	일○청
46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61-1	전	760	760	사천시
47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62	전	1,336	1,336	사천시
48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65-1	전	44	44	사천시
49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65-2	전	119	119	사천시
50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65-3	전	70	70	사천시
51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74-4	구	8,679	3,202	국)농림축산식품부
52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산117-6	임	28	28	전○대
53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73	답	112	112	사천시
54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72-1	답	77	77	사천시
55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31-10	도	56	56	사천시
56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31-14	답	31	31	사천시
57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31-9	도	4	4	사천시
58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31-13	답	99	99	사천시
59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31-8	도	2	2	사천시
60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31-12	답	356	356	사천시
61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30	구	182	182	국)농림축산식품부
				14,116	8,639			

7 H	소	재	지	7) HJ	7) 12	대장	편입	ИH
구분	시,군	읍,면	리	지 번	지 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62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31-7	도	5	5	사천시
63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31-6	도	3	3	사천시
64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31-11	답	50	50	사천시
65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60-2	도	9	9	사천시
66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60-4	답	105	105	사천시
67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60-3	도	42	42	사천시
68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60-5	답	214	214	사천시
69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61	도	370	60	국)농림축산식품부
70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61-2	목	922	922	사천시
71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59-3	답	7	7	사천시
72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58-3	답	83	83	사천시
73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28	구	1,760	156	국)농림축산식품부
74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58-2	목	136	136	사천시
75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22	도	3,390	60	국)농림축산식품부
76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57-3	답	520	52	사천시
77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57-2	답	182	182	사천시
78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56-3	답	51	51	사천시
79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56-4	대	118	118	사천시
80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9-12	답	8	8	사천시
81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72-2	도	50	50	사천시
82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5-3	도	93	93	정○식
83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53-2	답	59	59	사천시
84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52-4	답	9	9	사천시
85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52-3	대	5	5	사천시
86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51	도	655	73	국)농림축산식품부
87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4-1	도	410	410	사천시
88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44-3	대	413	413	사천시
89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93	도	744	463	국)건설부
90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74-9	구	2,327	2,327	국)농림축산식품부
91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23-4	대	96	96	사천시
92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25-1	대	103	103	사천시
	:			12,939	6,364			

7 H	소	재	지	-1 vi	-) H	대장	편입	n m
구분	시,군	읍,면	리	지 번	지 목	면적 (m²)	면적 (m²)	성명
93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4-3	구	136	136	국)농림축산식품부
94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634-8	구	5	5	사천시
95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99-1	도	59	59	국)건설부
96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85-2	도	20	20	사천시
97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85-3	전	33	33	사천시
98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902	도	516	87	국)건설부
99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84-2	도	13	13	최○주
100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84-3	전	62	62	곽○란
101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903	도	661	120	국)건설부
102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83-1	전	35	35	사천시
103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81-1	목	36	36	사천시
104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79-1	전	171	171	사천시
105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78-3	답	600	600	사천시
106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778-4	답	208	208	사천시
	소계					2,555	1,585	
	합계					38,362	21,279	

제 757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37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2. 16.

사 천 시 장

-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제2021-13호
-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O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
- O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O 선박접안용 부잔교 설치
-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O 사천시 마도동 산15-3번지선
-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O 신고번호 : 제2021-13호
 - O 공사기간: 2021. 12. 8.~2022. 1. 30.
-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1. 12. 8.
-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O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O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제 757호

사천시 고시 제2021-374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산업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2-152호(2012.09.13.)로 최초 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하고 사천시 고시 제2021-22호(2021.01.14.)로 최종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 승인·고시한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변경)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 천 시 장

- □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서부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기타 제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함
-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제 757호

○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248,494㎡, 변경 248,498㎡ (증 4㎡)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2. 09. 13. ~ 2022. 12. 31.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 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52),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가. 사업시행자

- 당초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최진태
- 변경 위탁자 :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정형규수탁자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나. 주 소

- 당초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 변경 위탁자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수탁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골든타워)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전	답	구	도	대	임	창
필지수	당초	48	18	2	9	1	2	16	_
(개소)	변경	48	18	2	9	1	2	16	-
면 적	당초	248,494	89,937	5,127	4,399	293	7,765	140,973	-
(m²)	변경	248,498	89,937	5,127	4,399	293	7,765	140,977	-
구성비	당초	100.0	36.2	2.1	1.8	0.1	3.1	56.7	-
(%)	변경	100.0	36.2	2.1	1.8	0.1	3.1	56.7	-

제757호

나. 소유자별 현황

ユ	구 분			국・공유지		사유지	
	て	합 계	소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u>^</u> Γπ^	
필지수	당초	-	48	10	1	9	38
일 시 ㅜ	변경	48	10	1	9	38	
면적(m²)	당초	248,494	4,692	293	4,399	243,802	
인역(m)	변경	248,498	4,692	293	4,399	243,806	
구성비(%)	당초	100.0	1.9	0.1	1.8	98.1	
7 78 41(%)	변경	100.0	1.9	0.1	1.8	98.1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전	(m²)	구성티	1 (%)	비고
十 七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비고
총계	248,494	248,498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158,006	158,006	63.6	63.6	
BL1	58,825	58,825	23.7	23.7	
BL2	74,848	74,848	30.1	30.1	
BL3	10,495	10,495	4.2	4.2	
BL4	13,838	13,838	5.6	5.6	
지원시설용지	4,205	4,205	1.7	1.7	
공공시설용지	86,283	86,287	34.7	34.7	
도로	34,479	34,479	13.9	13.9	
배수지	1,824	1,824	0.7	0.7	
저류지	5,850	5,850	2.4	2.4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1,550	0.6	0.6	
주차장1	2,070	2,070	0.8	0.8	
주차장2	1,000	1,000	0.4	0.4	
공원	3,943	3,943	1.6	1.6	
완충녹지	35,567	35,571	14.3	14.3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변경없음)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m²)

근 벼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开包	丁七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7	2,557 1 (2,066)	38,754 1 (34,479)	2	1,107 1 (616)	17,671 1 (13,396)	4	1,330 1 (1,330)	20,352 1 (20,352)	1	120 1 (120)	731 1 (731)
중로	기정	5	2,384 1 (1,893)	37,791 1 (33,516)	2	1,107 1 (616)	17,671 1 (13,396)	3	1,277 1 (1,277)	20,120 1 (20,120)	-	_	-
소로	기정	2	173 1 (173)	963 1 (963)	_	-	-	1	53 1 (53)	232 1 (232)	1	120 1 (120)	731 1 (731)

※ ¹()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제757호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규 모 번호	· 폭원(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1	42	20~26.25	집산 도로	883 ¹(392)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중로	1	43	20	집산 도로	224 ¹(224)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0	16~19.25	집산 도로	501 ¹(501)	산업용지 BL1	완충녹지52	일반 도로	_	"	
기정	중로	2	51	15	집산 도로	444 ¹(444)	산업용지 BL1	중로2-50	일반 도로	_	"	
기정	중로	2	52	15~18.25	집산 도로	332 ¹(332)	중로2-50	중로2-5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57	8	국지 도로	53 ¹(53)	중로2-51	산업단지경 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기정	소로	3	157	6	국지 도로	120 ¹(120)	중로2-50	유수지⑨	일반 도로	-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임

나)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7 1	도면	,	A) -1	1	면 적 (m²)	최 초	
구 분	분 표시 시설명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 정	28	주차장	사다리 217-1번지	1,000	-	1,00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 정	29	주차장	사다리 산26-10번지	2,070	-	2,070	"	

2) 공간시설

가)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모기	표시 공 원 명	시설의	위 치	ו	면 적 (m²)		최 초	
구 분	표시 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44	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27-1번지	2,253	-	2,253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가	공원	소공원	사다리 217-1번지	1,690	_	1,690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 1 천 시 공 보

제757호

나)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지원이		면 적 (㎡)			. 최 초	-3
구 분	본 표시 시설명 세 ^설 원 번호 비호	시설명 세설원 위 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소 계				35,567	증) 4	35,571		
기 정	4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82-1	15,450	-	15,4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변경	49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4번지	4,959	증) 4	4,963	"	
기 정	52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5-2번지	15,158	-	15,158	"	

3) 유통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O 용수량

구 분	용수수요량(㎡/일)	비고
계	2,087	
축동일반산업단지	663	계획용수량 : 2,087㎡/일
대동일반산업단지	254	배수지용량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790	V=1,200㎡ (체류시간12시간)
탑리지역	380	

O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н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	Ę	면 적 (m	·)	최 초	비고
구분	번 호	시설명	71/1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1177
기정	8	수도공급설비	사다리 135-2번지	1,824	-	1,824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제757호

- 4) 방재시설
 - 가) 유수지 (변경없음)
 - O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위치 -	면 적(㎡)			최 초	비고
		호 시설명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미北
기 정	9	유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5,850	-	5,8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 5) 환경기초시설
 -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 O 오·폐수량

구 분	오폐수량(m³/일)	비고
합계	197.8	
산업폐수	114.5	계획오·폐수량 : 197.8㎡/일
생활오수	83.3	

O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7.3	도면		시설의	ما جا	면 적 (m²)			최 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 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6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1,550	-	1,5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9.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총 사업비 59,047백만원 중 사업시행자 자기자본금 300백만원, 타인자 본인 금융권대출 34,236백만원, 투자금 11,200백만원, 분양수익금으로 13,311백만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제 757호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투자내역	투자액	(천원)
당초	변경	구사내득	당초	변경
2011년~2014	2011132014	용지비 및 보상비	_	-
	2011년~2014	기타비	-	_
년	년	소계	-	-
		용지비 및 보상비	2,500,000	3,000,000
2015년	2015년	공사비	1,155,000	1,155,000
2013년	2013년	기타비용	800,000	300,000
		계	4,455,000	4,455,000
		용지비 및 보상비	800,000	1,300,000
001013	001013	공사비	4,169,000	4,169,000
2016년	2016년	기타비용	1,000,000	500,000
		계	5,969,000	5,969,000
	2017년	용지비 및 보상비	2,500,000	2,800,000
001713		공사비	-	_
2017년		기타비용	500,000	200,000
		계	3,000,000	3,000,000
		용지비 및 보상비	7,700,000	9,200,000
001013	2018년	공사비	-	_
2018년		기타비용	3,200,000	1,700,000
		계	10,900,000	10,900,000
		용지비 및 보상비	1,620,000	2,120,000
001013	001013	공사비	600,000	600,000
2019년	2019년	기타비용	1,800,000	1,300,000
		계	4,020,000	4,020,000
		용지비 및 보상비	1,768,000	651,000
2020년~	000013	공사비	19,556,000	_
2022년	2020년	기타비용	1,700,000	1,063,000
_			23,024,000	1,714,000
		용지비 및 보상비	_	2,553,200
	2021년~	공사비	_	20,216,000
_	2022년	기타비용	_	6,219,800
	_		-	28,989,000
	ζ	합 계	51,368,000	59,047,000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붙임) (변경)

제 757호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업 종	면 적(㎡)	구성비(%)
계	-	158,006	100.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36,128	2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13,838	8.8
제 조 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10,495	6.6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58,299	36.8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52)	39,246	24.9

- ※ 산업단지내 전체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가능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 가. 개발되는 토지
 - 사천시 무상귀속

구 분	면 2	덕 (m²)	구성타	। (%)	ען יי
T ゼ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비고
무상귀속면적	81,663	81,667	32.9	32.9	
도로	34,479	34,479	13.9	13.9	
주차장	_	_	-	-	
배수지	1,824	1,824	0.7	0.7	
저류지	5,850	5,850	2.4	2.4	
폐수종말처리시설	_	_	-	-	
공원	3,943	3,943	1.6	1.6	
완충녹지	35,567	35,571	14.3	14.3	

○ 사업시행자 귀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사업자귀속면적	166,831	67.1	
산업시설용지	158,006	63.6	
지원시설용지	4,205	1.7	
주차장	3,070	1.2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0.6	

제 757호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u		구성비	비고		
	구		기 정	변 경	변경후	(%)	N 7
합 계			248,498	-	248,498	100.0	
	공업 지역	소 계	248,494	증) 4	248,498	100.0	
도시		일반공업지역	248,494	증) 4	248,498	100.0	
지역	녹지 지역	소 계	4	감) 4	-	0.0	
		자연녹지지역	4	감) 4	-	0.0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	위 치	용도	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71 /1	기 정	변경	(m²)	(%이하)	원 ((년/6) 기미		
-	산20-32번지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4	300이하	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에 따 른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д н	도면 구분 표시 번호	7 4 12	ما خا		ul –		
		구역명 -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 비고 -
변경	17	축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35-2번지 일원	248,494	증) 4	248,498	

제757호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17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35-2번지 일원	면적증가 248,494㎡→248,498㎡ 증) 4㎡	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전	(m²)	구성1	i) (%)	비고
十 七	당초	변경	당초	변경	п т
총계	248,494	248,498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158,006	158,006	63.6	63.6	
BL1	58,825	58,825	23.7	23.7	
BL2	74,848	74,848	30.1	30.1	
BL3	10,495	10,495	4.2	4.2	
BL4	13,838	13,838	5.6	5.6	
지원시설용지	4,205	4,205	1.7	1.7	
공공시설용지	86,283	86,287	34.7	34.7	
도로	34,479	34,479	13.9	13.9	
배수지	1,824	1,824	0.7	0.7	
저류지	5,850	5,850	2.4	2.4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1,550	0.6	0.6	
주차장1	2,070	2,070	0.8	0.8	
주차장2	1,000	1,000	0.4	0.4	
공원	3,943	3,943	1.6	1.6	
완충녹지	35,567	35,571	14.3	14.3	

제 757호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O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m²)

근 11	¬ н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구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변경	7	2,557 1 (2,066)	38,754 1 (34,479)	2	1,107 1 (616)	17,671 1 (13,396)	4	1,330 1 (1,330)	20,352 1 (20,352)	1	120 1 (120)	731 1 (731)
중로	변경	5	2,384 1 (1,893)	37,791 1 (33,516)	2	1,107 1 (616)	17,671 1 (13,396)	3	1,277 1 (1,277)	20,120 1 (20,120)	-	-	-
소로	변경	2	173 1 (173)	963 1 (963)	-	-	-	1	53 ¹ (53)	232 1 (232)	1	120 1 (120)	731 1 (731)

[※] ¹()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O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モユ	류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_주 님	丁包	민오	국전(III)		(111)				0 1 1	-	
기정	중로	1	42	20~26.25	집산 도로	883 ¹(392)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중로	1	43	20	집산 도로	224 ¹(224)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ı	<i>"</i>	
기정	중로	1	56	20	집산 도로	235 ¹(0)	소로1-2	중로1-4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0	16~19.25	집산 도로	501 ¹(501)	산업용지 BL1	완충녹지52	일반 도로	_	<i>'</i> /	
기정	중로	2	51	15	집산 도로	444 ¹(444)	산업용지 BL1	중로2-50	일반 도로	-	<i>"</i>	
기정	중로	2	52	15~18.25	집산 도로	332 ¹(332)	중로2-50	중로2-51	일반 도로	ı	<i>'</i> /	
기정	소로	2	257	8	국지 도로	53 ¹(53)	중로2-51	산업단지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기정	소로	3	157	6	국지 도로	120 ¹(120)	중로2-50	유수지⑨	일반 도로	_	"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임

제757호

- 나)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o) ⇒) -	,	면 적 (m²)	최 초	비고
구 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 정	28	주차장	사다리 217-1번지	1,000	-	1,00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 정	29	주차장	사다리 산26-10번지	2,070	-	2,07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ו	면 적 (m²)	ı	최초	_
구 분	표시 번호	공 원 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44	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27-1번지	2,253	-	2,253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가	공원	소공원	사다리 217-1번지	1,690	-	1,690	1/	

나)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선이	4) -)		면 적 (m²)		최 초	
구 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소	. 계		35,567	증) 4	35,571		
기 정	4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82-1	15,450	-	15,4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변 경	49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4번지	4,959	증) 4	4,963	"	
기 정	52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5-2번지	15,158	-	15,158	"	

제757호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9	완충녹지	· 면적증가 - A = 4,959㎡→4,963㎡ (중 4㎡)	· 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에 따른 면적증가

3) 유통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7 H	도면표시	रो से म	0) =1	Ĺ	면 적 (m	²)	최 초	יון די
구분	번 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 정	8	수도공급설비	사다리 135-2번지	1,824	-	1,824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변경없음)

O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7 H	도면표시	기거대	시설의 이 리		면 적 (m²)			최 초	ב (ע
구분	번 호	시설명	세 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 정	9	유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5,850	-	5,8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5)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O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7 H	도면	기시대	시설의	رم دا	Ţ	면 적 (m	î)	최 초 결정일	비고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 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1,550	-	1,5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제757호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면 ?	적(m²)		획	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1 -	-v1 -r1	위	치	면 🤄	적(m²)	비고
0.4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I -1			I -1	I -1	1,000	1,000	주차장@
_	I -2			I -2	I -2	2,070	2,070	주차장29
-	I -3	12,294	12,294	I -3	I -3	1,550	1,550	폐수종말처리시설⑥
-	I -4			I -4	I -4	5,850	5,850	저류시설⑨
_	I -5			I -5	I -5	1,824	1,824	배수시설⑧
					II -BL1-1		11,978	
					II -BL1-2		4,651	
-	II -BL1			II -BL1	II -BL1-3	58,825	6,204	
					II -BL1-4		16,413	
					II -BL1-5		19,579	
					II -BL2-1		10,311	
					II -BL2-2		9,195	
					II -BL2-3		8,581	
					II -BL2-4	74,848	4,369	
					II -BL2-5		3,153	
	II -BL2	158,006	158,006	II -BL2	II -BL2-6		2,269	
-	II -DL2	150,000	130,000	II DLZ	II -BL2-7	74,040	2,336	
					II -BL2-8		3,201	
					II -BL2-9		4,599	
					II -BL2-10		7,620	
					II -BL2-11		8,705	
					II -BL2-12		10,509	
_	II -BL3			II -BL3	II -BL3-1	10,495	8,840	
	II -DL3			II -DL3	II -BL3-2	10,495	1,655	
					II -BL4-1		2,745	
-	II -BL4			II -BL4	II -BL4-2	13,838	2,280	
					II -BL4-3		8,813	
_	III	4,205	4,205	III	III	4,205	4,205	
_	IV -1-1			IV -1-1	IV -1-1	15,523	15,523	완충녹지46
-	IV -1-2			IV -1-2	IV -1-2	4,959	4,963	완충녹지솋
-	IV -1-3	39,460	39,464	IV -1-3	IV -1-3	15,158	15,158	완충녹지⑤2
_	IV -2-1			IV -2-1	IV -2-1	2,253	2,253	공원49
	IV -2-2			IV -2-2	IV -2-2	1,690	1,690	공원⑦

제 757호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창고 및 운송관련업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_	- II -BL1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	II -BL2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시멘트,석회및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1) 콘크리트,레미콘및기타시멘트,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2) 석면,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C23994)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_
		형 태	-
		색 채	_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II -BL3	건폐율	• 70%이하
_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II -BL4	건폐율	• 70%이하
_	II -DL4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 축물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	- III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_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지정용도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I -1 I -2	권장용도	-
	1 -2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용적률	•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제757호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창고 및 운송관련업 태양에너지발전업
	II -BL1-1 II -BL1-2 II -BL1-3 II -BL1-4	권장용도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건폐율	• 70% া ক্রী-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II -BL1-5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II -BL2-1	건폐율	• 70%이하
	II -BL2-2 II -BL2-11	용적률	• 300%이하
	II -BL2-12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_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_	II -BL2-3 II -BL2-4 II -BL2-5 II -BL2-6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시멘트,석회및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1) 콘크리트,레미콘및기타시멘트,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2) 석면,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C23994)
	II -BL2-7 II -BL2-8	건폐율	• 70%০) ঠ
	II -BL2-9 II -BL2-10	용적률	• 300%০) ই
	II -DL2-10	높 이	• 5층 이하
		배치	_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_	II -BL3-1	건폐율	• 70%০) ই
	II -BL3-2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_	II -BL4-1 II -BL4-2	건폐율	• 70%০] চ্
	II -BL4-3	용적률	• 300%০] চ্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০) ঠ
-	III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제 757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_	I -1	권장용도	-
	I -2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용적률	•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배치	-
		형 태	-
		색 채	_
		건축선	_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 어 내 용	비고
기정		중로1-42호선과 중로 1-43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1-43호선과 중로 2-50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2-50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1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0호선과 소로 3-157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제 757호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소공원∰
- 가) 공원조성계획
- □ 부지총괄표

그 비 시 서 머		0) =1		면 적(m²)		
丁七	구분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합	계		2,253	-	2,253	
기 정	보 행 로		308	-	308	
기 정	운동시설	사다리 산27-1번지	66	-	66	
기 정	휴양시설		58	-	58	
기 정	녹 지		1,821	-	1,821	

□ 시설총괄표

7 11	मी स्ने m	시 설 명 면 적(m²) -		시설규모(㎡)		
一 一 元	구분 시설명	면 식(m)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합 계	2,253	66	66		
기 정	보 행 로	308	-	-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운동시설	66	66	66	파고라1동	
기 정	휴양시설	58	-	-		
기 정	녹 지	1,821	-	-		

□ 일반시설별조서

구 분	도면표시	면 적(m²)	위 치	,	시설규모(㎡)	비고	
一 7 正	번 호	전 역(m)	77 71	건축면적	연면적	충수	비포
합	계	2,253		66	66	1	
보 행 로	1	308		-	-	-	
운동시설	2	66	사다리 산27-1번지	66	66	1	1동
휴양시설	3	58] = - ,	-	-	_	
녹 지	4	1,821		-	-	-	

제 757호

■ 소공원⑦

가) 공원조성계획

□ 부지총괄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十七	구분 시설명	T 1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합	계		1,690	-	1,690		
기 정	보 행 로		189	-	189		
기 정	운동시설	사다리 217-1번지	106	-	106		
기 정	휴양시설		36	-	36		
기 정	녹 지		1,359	-	1,359		

□ 시설총괄표

7. 14	क्षी स्त्री	면 적(㎡)	시설규	모(m²)	비고	
丁七	구분 시설명	한 석(m)	바닥면적	연면적	1 1/ 1/	
,	합 계	1,690	106	106		
기 정	보 행 로	189	-	-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운동시설	106	106	106	파고라1동	
기 정	휴양시설	36	-	-		
기 정	녹 지	1,359	-	-		

□ 일반시설별조서

7 13	도면표시	rd 고l(2)	다. 기(²)	다 기(2) 이 기	시설규모(㎡)			비고
구 분	번 호	면 적(m²)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충수	비끄	
합	계	1,690		106	106	1		
보 행 로	1	189		-	-	-		
운동시설	2	106	사다리 217-1번지	106	106	1	1동	
휴양시설	3	36		-	-	-		
녹 지	4	1,359		-	-	-		

1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산업입지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 시 행 지 침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4장 기타사항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축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작성되는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 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적용한다.
- 제3조 (지침적용의 구성) 본 지침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4장 기타사항,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에, 제3장은 지원시설용지에 각각 적용한다.
-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련법규 및 사천시 관련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② 본 지침 내용 중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 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 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규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

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 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 6.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최상층수에 해당하는 층의 바닥면적은 바로 아래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 7.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8.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9.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 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6조 (건축물의 용도)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규 제 내 용	則	고
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권장용도 한국표준산업분류 , C23(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114(태양에너지발전업-지붕및주차장에한함), H52(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제조업 시멘트,석회및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1), 콘크리트,레미콘및기타시멘트, 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2), 석면,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C23994) 		

제7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300	5층이하
70	-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로 한다.
- ③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 한다.

제8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제한 없음

- 제9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 ③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주차장) 산업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제11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3장 지워시설용지

제12조 (건축물의 용도) 지원시설용지에서의 용도 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규 제 내 용
지원시설용지	•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 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제13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용적률	최고층수	300
건폐율	최저층수	70

300	5층이하
70	-

- ② 지원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로 적용한다.
- ③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하로 한다.
- 제14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① 계단실과 승강기 및 주차장(주차설비 포함)은 보행 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계단실과 승강기 외벽의 50%이상 투시형 으로 할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③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와 보행자전용도로변과의 고저차는 2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형의 부득이한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제한 없음

- ②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6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 제17조 (주차장) 지원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 제18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비의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4장 기타사항

- 제19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 내로 제한하며, 가능한 지주형 간판에 집약설치를 유도한다.
 - ② 세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1개의 간판만 표시하여야 한다.
 - 2.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 3m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 3. 2의 규정에 의해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 가로 60cm이내, 세로 200cm 이내이 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 ③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은 가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한다.
 - ④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입체형 간판 또는 차양. 현수막을 이용한 간판을 권장한다.
 - ⑤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 시 관련 조례 등에 따른다.
- 제20조 (가설건축물 및 기타)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가설건축물은 설치 할 수 없다.
- 제21조 (녹지공간 식재계획) ① 완충녹지 및 공원내 산책로 주변으로 계절별 수종을 식재해야 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제22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 된다.
 -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제 757호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7	н		면 적 (m²)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	비고	
	합	계	248,498	-	248,498	100.0		
	공업	소 계	248,494	증) 4	248,498	100.0		
도시	지역	일반공업지역	248,494	증) 4	248,498	100.0		
지역	녹지	소 계	4	감) 4	-	0.0		
	지역	자연녹지지역	4	감) 4	-	0.0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치 번호	o) =1	용도	지역	면적	용적률	거지(바커) 기 0	
	위 치	기 정	변경	면적 (m)	용적률 (%이하)	결정(변경) 사유	
-	산20-32번지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4	300이하	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에 른 용도지역 변경	따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및 사유서 (변경)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7 4 7	구역명 위 치		면적(m²)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지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17	축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35-2번지 일원	248,494	증) 4	248,498			

제 757호

나)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17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35-2번지 일원	면적증가 248,494㎡→248,498㎡ (증) 4㎡	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에 따른 면적증가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가) 교통시설
- (1) 도로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m, m²)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11世	丁七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하고	버거	7	2,557	38,754	2	1,107	17,671	1	1,330	20,352	1	120	731	
법계	변경	′	1 (2,066)	1 (34,479)		1 (616)	¹ (13,396)	4	1 (1,330)	1 (20,352)	1	¹ (120)	¹ (731)	
중로	버거	E	2,384	37,791	2	1,107	17,671	3	1,277	20,120				
	변경	5	1 (1,893)	1 (33,516)	2	1 (616)	1 (13,396)	3	1 (1,277)	1 (20,120)	_	_	_	
人口	변경	2	173	963				1	53	232	1	120	731	
21.2	면경	۷	¹ (173)	1 (963)	_	_	_	1	1 (53)	1 (232)	1	¹ (120)	1 (731)	

※ 1()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규 모 등급류별번호 폭원(m)		기능	기능 연장 기점 (m)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_{이 비}	サゼ	빈오	국전(III)		(111)				3 44 人	결정될			
기정	중로	1	42	20~26.25	집산 도로	883 1(392)	지방도 1002호선	사천시경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중로	1	43	20	집산 도로	224 1(224)	중로1-42	중로2-50	일반 도로	_	′/			
기정	중로	1	56	20	집산 도로	235 1(0)	소로1-2	중로1-4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0	16~19.25	집산 도로	501 1(501)	산업용지 BL1	완충녹지52	일반 도로	_	1/			
기정	중로	2	51	15	집산 도로	444 1(444)	산업용지 BL1	중로2-50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52	15~18.25	집산 도로	332 1(332)	중로2-50	중로2-51	일반 도로	_	"			
기정	소로	2	257	8	국지 도로	53 1(53)	중로2-51	산업단지경 계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기정	소로	3	157	6	국지 도로	120 1(120)	중로2-50	유수지⑨	일반 도로	_	′/			

※ ()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내 도로 연장임

제 757호

- (2)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1	면 적 (m²)	최 초	
구 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 정	28	주차장	사다리 217-1번지	1,000	-	1,00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 정	29	주차장	사다리 산26-10번지	2,070	-	2,07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나) 공간시설

- (1)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 u	도면	- A -1	시설의	61 51	1	면 적 (m²)		최 초	
구 분	표시 번호	공 원 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44	공원	소공원	사다리 산27-1번지	2,253	-	2,253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가	공원	소공원	사다리 217-1번지	1,690	-	1,690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2)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N	도면	.1.11-1	시설의	A) 7)		면 적 (m²)		최 초	
구분	구분 표시 시설명 번호 번호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소	. 계		35,567	증) 4	35,571		
기정	46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82-1	15,450	-	15,4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변경	49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산26-4번지	4,959	증) 4	4,963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기정	52	녹지	완충녹지	사다리 135-2번지	15,158	_	15,158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제 757호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9	완충녹지	· 면적증가 - A = 4,959㎡→4,963㎡ (증 4㎡)	· 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에 따른 면적증가

다) 유통 · 공급시설

- (1)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ما جا	Ţ	면 적 (m²)		최 초	,
구 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8	수도공급설비	사다리 135-2번지	1,824	_	1,824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라) 방재시설

- (1)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 설	시설의	위 치 -	면 적 (m²)			최 초	비고
1 1	표기 번호	명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H 1/2
기정	9	유수지	저류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5,850	-	5,8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마) 환경기초시설

- (1)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л н	도면	기지대	시설의	رام ا	면 적 (m²) 위 치			최 초	ul –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6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다리 산26-10번지	1,550	-	1,550	사천시고시 제2012-152호 (2012.09.13.)	

제757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면 ?	적(m²)		획	지			
도면	가구번호	-1 -		위	치	면 🤇	적(m²)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_	I -1			I -1	I -1	1,000	1,000	주차장28	
-	I -2			I -2	I -2	2,070	2,070	주차장29	
-	I -3	12,294	12,294	I -3	I -3	1,550	1,550	폐수종말처리시설 ⑥	
-	I -4			I -4	I -4	5,850	5,850	저류시설⑨	
-	I -5			I -5	I -5	1,824	1,824	배수시설⑧	
					II -BL1-1		11,978		
					II -BL1-2		4,651		
-	II -BL1			II -BL1	II -BL1-3	58,825	6,204		
					II -BL1-4		16,413		
					II -BL1-5		19,579		
					II -BL2-1		10,311		
						II -BL2-2		9,195	
						II -BL2-3		8,581	
				W DLO	II -BL2-4	74,848	4,369		
					II -BL2-5		3,153		
	DI 0	150.000	150.000		II -BL2-6		2,269		
_	II -BL2	158,006	158,006	II -BL2	II -BL2-7		2,336		
					II -BL2-8		3,201		
					II -BL2-9		4,599		
					II -BL2-10		7,620		
					II -BL2-11		8,705		
					II -BL2-12		10,509		
	II DI O			II DI O	II -BL3-1	10.405	8,840		
_	II -BL3			II -BL3	II -BL3-2	10,495	1,655		
					II -BL4-1		2,745		
-	II -BL4			II -BL4	II -BL4-2	13,838	2,280		
					II -BL4-3		8,813		
-	III	4,205	4,205	III	III	4,205	4,205		
_	IV -1-1			IV -1-1	IV -1-1	15,523	15,523	완충녹지46	
-	IV -1-2			IV -1-2	IV -1-2	4,959	4,963	완충녹지@	
_	IV -1-3	39,460	39,464	IV -1-3	IV -1-3	15,158	15,158	완충녹지②	
	IV -2-1			IV -2-1	IV -2-1	2,253	2,253	공원@	
_	IV -2-2			IV -2-2	IV -2-2	1,690	1,690	공원②	

제757호

4)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창고 및 운송관련업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_	II -BL1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II DL1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	II -BL2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시멘트,석회및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1) 콘크리트,레미콘및기타시멘트,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2) 석면,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C23994)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_	II -BL3	건폐율	• 70%이하
	II DL3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II DI 4	건폐율	• 70%이하
_	II -BL4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 축물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 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_	III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_
		색 채	-
		건축선	-
		지정용도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I - 1	권장용도	-
-	I -1 I -2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용적률	•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배치	_
		형 태	-
		색 채	-
		건축선	_

제757호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창고 및 운송관련업 태양에너지발전업
	II -BL1-1 II -BL1-2 II -BL1-3 II -BL1-4	권장용도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건폐율	• 70%) ই
		용적률	• 300% া ক্র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II -BL1-5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_	II -BL2-1	건폐율	• 70%이하
	II -BL2-2 II -BL2-11	용적률	• 300%이하
	II -BL2-11 II -BL2-12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_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_	II -BL2-3 II -BL2-4 II -BL2-5 II -BL2-6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시멘트,석회및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1) 콘크리트,레미콘및기타시멘트,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2) 석면,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C23994)
	II -BL2-7 II -BL2-8	건폐율	• 70%이하
	II -BL2-9 II -BL2-10	용적률	• 300% া ঠা-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_
		건축선	_
		지정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_	II -BL3-1	건폐율	• 70%이하
	II -BL3-2	용적률	• 300% া ক্রী-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_	II -BL4-1 II -BL4-2	건폐율	• 70%이하
	II -BL4-3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 축물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	III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제 757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_	I -1	권장용도	_
	I -2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용적률	●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배 치	-
		형 태	_
		색 채	-
		건축선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제어요소	적용구간	제 어 내 용	비고
기정		중로1-42호선과 중로 1-43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1-43호선과 중로 2-50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2-50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1호선과 중로 2-52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기정		중로2-50호선과 소로 3-157호선 교차지점 으로부터 최소 35m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부 구간내 차량진·출입불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참조

제 757호

다.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소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소공원4

■ 부지총괄표

7. H	구 분 시 설 명	위치			비고	
丁七	기설명	T 4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53	-	2,253	
기 정	보 행 로		308	-	308	
기 정	운동시설	사다리 산27-1번지	66	-	66	
기 정	휴양시설	_ ,	58	-	58	
기 정	녹 지		1,821	-	1,821	

■ 시설총괄표

л н	ा स म	다 자(,2)	시설규	비고	
구 분	시 설 명	면 적(m²)	바닥면적	연면적	nl 17.
,	합 계	2,253	66	66	
기 정	보 행 로	308	-	_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운동시설	66	66	66	파고라1동
기 정	휴양시설	58	-	-	
기 정	녹 지	1,821	-	-	

■ 일반시설별조서

7. H	도면표시	면 적(㎡)	위 치	,		비고	
구 분	번 호	런 석(m)	7 7	건축면적	연면적	충수	H1-72
함	계	2,253		66	66	1	
보 행 로	1	308		-	-	-	
운동시설	2	66	사다리 산27-1번지	66	66	1	1동
휴양시설	3	58		-	-	-	
녹 지	4	1,821		-	_	_	

제 757호

나) 소공원⑦

■ 부지총괄표

구 분	2) 2-1 ml	위치			비고	
一	시설명		기 정	변 경	변경후	n 7.
함	계		1,690	-	1,690	
기 정	보 행 로		189	-	189	
기 정	운동시설	사다리 217-1번지	106	-	106	
기 정	휴양시설		36	-	36	
기 정	녹 지		1,359	-	1,359	

■ 시설총괄표

7 H	ग्रीक्षी स्व	다 자(,²)	시설규	시설규모(㎡)			
구 분	시 설 명	면 적(㎡)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	합 계	1,690	106	106			
기 정	보 행 로	189	-	-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운동시설	106	106	106	파고라1동		
기 정	휴양시설	36	-	-			
기 정	녹 지	1,359	-	-			

■ 일반시설별조서

7 H	도면표시	다 자(~²)	o) =1	,		비고	
구 분	번 호	면 적(㎡)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충수	H177
ố <u>}</u>	계	1,690		106	106	1	
보 행 로	1	189		-	_	-	
운동시설	2	106	사다리 217-1번지	106	106	1	1동
휴양시설	3	36		-	_	_	
녹 지	4	1,359		-	-	_	

제 757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번지 일원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공원, 배수지, 저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2) 명 칭 :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	분		면적 또는 규모	비고
	당초	중로1-42호선	L=392m, B=20~26.25m, A=9,056 m ²	
	당초	중로1-43호선	L=224m, B=20m, A=4,340 m ²	
	당초	중로2-50호선	L=501m, B=16~19.25m, A=8,024 m ²	
도 로	당초	중로2-51호선	L=444m, B=15m, A=6,741 m²	
	당초	중로2-52호선	L=332m, B=15~18.25m, A=5,355 m ²	
	당초	소로2-257호선	L=53m, B=8m, A=232 m ²	
	당초	소로3-157호선	L=120m, B=6m, A=731m ²	
주차장	당초	28	A=1,000 m ²	
T/18	당초	29	A=2,070 m ²	
	당초	46	A=15,450 m²	
완충녹지	당초	49	A=4,959 m²	
선정되시	변경	49	A=4,963 m²	
	당초	52	A=15,158 m²	
공원	당초	44	$A=2,253\text{m}^2$	
े रेट	당초	가	A=1,690 m ²	
수도공급설비(배수지)	당초	8	A=1,824 m ²	
유슈지(저류시설)	당초	9	A=5,850 m²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당초	6	A=1,550 m²	
합 계	당초	-	A=86,283 m²	
H /1	변경	-	A=86,287 m²	

제757호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1) 성 명 : 당초 - ㈜장원 대표이사 최진태

변경 - 위탁자 : ㈜장원 대표이사 정형규

└ 수탁자 :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2) 주 소 : 당초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변경 - 위탁자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 수탁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골든타위)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 준공예정일 : 2022.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 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붙임〉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기정)

			, , ,	면 ?	적(m²)	소	유 자	소유권 여	기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비고
1	축동면 사다리	123	대	538	538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2	축동면 사다리	135	전	2,205	2,205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3	축동면 사다리	135-1	전	1,580	1,580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4	축동면 사다리	135-2	전	71,957	71,957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5	축동면 사다리	182-1	전	1,322	1,322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6	축동면 사다리	187	전	232	232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위)			
7	축동면 사다리	190	전	502	502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8	축동면 사다리	191	전	1,289	1,289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9	축동면 사다리	192	전	1,997	1,997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10	축동면 사다리	193	전	1,911	1,911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11	축동면 사다리	202	전	714	714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12	축동면 사다리	203	임	506	506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13	축동면 사다리	204	전	1,104	1,104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14	축동면 사다리	205	답	2,780	2,780	서〇〇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2**	청주흥덕구		압류

서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n) =
연번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비고
15	축동면 사다리	206-1	전	757	757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16	축동면 사다리	206-2	전	1,924	1,924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위)			
17	축동면 사다리	207	대	7,227	7,227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18	축동면 사다리	210	전	625	625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19	축동면 사다리	211	전	691	691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20	축동면 사다리	217-1	답	2,347	2,347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21	축동면 사다리	217-3	전	423	423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22	축동면 사다리	218	전	198	198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위)			
23	축동면 사다리	1044	구	76	76	기획재정부				
24	축동면 사다리	1053	구	119	119	기획재정부				
25	축동면 사다리	1054	구	354	354	기획재정부				
26	축동면 사다리	산20-22	임	859	276	୩୦୦	부산 중구 부평동 *가 1*-*	국(서부산세 무서)		압류
								부산광역시 중구		압류
								부산광역시 사하구		압류
								서부산 세무서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1*	압류
								서울보증 보험(주)	서울 종로구 연지동 1**-**	가압류
								부평새마을 금고	부산 중구 부평동*가 **	근저당설정
27	축동면 사다리	산26-1	임	49,817	49,817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28	축동면 사다리	산26-4	임	2,586	2,586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면 ?	적(m²)	소	유 자	소유권 ㅇ	기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u></u> 주 소	비고
29	축동면 사다리	산26-10	임	7,140	7,140		·		·	
30	축동면 사다리	산26-12	구	1,552	1,552	기획재정부				
31	축동면 사다리	산26-22	임	196	196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32	축동면 사다리	산26-23	임	481	481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33	축동면 사다리	산26-25	도	293	293	국토교통부				
34	축동면 사다리	산27-1	임	35,123	35,123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35	축동면 사다리	산28-1	임	92	92	#00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			미등기
36	축동면 사다리	산40-1	임	9,438	9,438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37	축동면 사다리	산41	임	5,271	5,271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박○○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시장길 2*-*,	서진주새마 을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113(평거동)	근저당권 (지분2분의1)
38	축동면 사다리	산42	읶	15.096	15.096	100	*호(대안동,중앙시 장*층*구)	서진주새마 을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113(평거동)	지상권
00	406 (1)	(.10	u	10,000	10,000	장○○	경남 진주시 금산면 덕의길 1*, 1**동 2**호(진주푸르지 오)			(지분2분의])
39	축동면 사다리	산43-3	임	1,484	1,484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40	축동면 사다리	산43-8	임	3,570	3,570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41	축동면 사다리	산43-9	임	2,975	2,975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42	축동면 사다리	산43-10	임	6,139	6,139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43	축동면 사다리	산43-22	구	562	562	기획재정부				
44	축동면 사다리	산43-23	구	727	727	기획재정부				
45	축동면 사다리	산43-24	구	825	825	기획재정부				
46	축동면 사다리	산43-26	구	19	19	기획재정부				
47	축동면 사다리	산44	임	1,289	1,289	아시아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 티앤지타워)			
48	축동면 사다리	산45-25	구	165	165	기획재정부				
	합 계			249,077	248,494					

(변경)

	소재지			면 ?	적(m²)	소	유 자	소유권 ㅇ	1외의 권리명세	
연번	(사천시)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비고
1	축동면 사다리	123	대	538	538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2	축동면 사다리	135	전	2,205	2,205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3	축동면 사다리	135-1	전	1,580	1,580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4	축동면 사다리	135-2	전	71,957	71,957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5	축동면 사다리	182-1	전	1,322	1,322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6	축동면 사다리	187	전	232	232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7	축동면 사다리	190	전	502	502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8	축동면 사다리	191	전	1,289	1,289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9	축동면 사다리	192	전	1,997	1,997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10	축동면 사다리	193	전	1,911	1,911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11	축동면 사다리	202	전	714	714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12	축동면 사다리	203	임	506	506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13	축동면 사다리	204	전	1,104	1,104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14	축동면 사다리	205	답	2,780	2,780	서○○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2**	청주흥덕구		압류
15	축동면 사다리	206-1	전	757	757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16	축동면 사다리	206-2	전	1,924	1,924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17	축동면 사다리	207	대	7,227	7,227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18	축동면 사다리	210	전	625	625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소재지		, _	면 ?	적(m²)	소	유 자	소유권 여	기외의 권리명세	
연번	(사천시)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고
19	축동면 사다리	211	전	691	691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위)			
20	축동면 사다리	217-1	답	2,347	2,347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위)			
21	축동면 사다리	217-3	전	423	423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위)			
22	축동면 사다리	218	전	198	198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23	축동면 사다리	1044	구	76	76	국(기획재정부)				
24	축동면 사다리	1053	구	119	119	국(기획재정부)				
25	축동면 사다리	1054	구	354	354	국(기획재정부)				
								국(서부산세 무서)		압류
								부산광역시 중구		압류
26	축동면 사다리	산20-32	임	280	280	୦।୦୦	부산 중구 부평동*가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압류
								국(중부산세 무서)		압류
								서울보증보 험(주)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영남신용관 리지원단)	가압류
27	축동면 사다리	산26-1	임	49,817	49,817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위)			
28	축동면 사다리	산26-4	임	2,586	2,586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소재지			면 ?	적(m²)	소	유 자	소유권 여	기외의 권리명세	_
연번	(사천시)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고
29	축동면 사다리	산26-10	임	7,140	7,140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30	축동면 사다리	산26-12	구	1,552	1,552	국(기획재정부)				
31	축동면 사다리	산26-22	임	196	196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32	축동면 사다리	산26-23	임	481	481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33	축동면 사다리	산26-25	도	293	293	국(국토교통부)				
34	축동면 사다리	산27-1	임	35,123	35,123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35	축동면 사다리	산28-1	임	92	92	미등기	-	4 00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8	토지대장상 소유자
36	축동면 사다리	산40-1	임	9,438	9,438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37	축동면 사다리	산41	임	5,271	5,271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박○○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시장길 ㅇㅇ-9.	서진주새마 을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113(평거동)	근저당권 (지분2분의1)
38	축동면 사다리	산42	임	15,096	15,096	4	7호(ㅇㅇ동,중앙시 장1층ㅇ구)	서진주새마 을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113(평거동)	지상권
						장○○	경남 진주시 금산면 ㅇㅇ길 15, 10ㅇ동 ㅇ01호(진주푸르지 오)	서진주새마 을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113(평거동)	근저당권 (지분2분의1)
39	축동면 사다리	산43-3	임	1,484	1,484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서진주새마 을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113(평거동)	지상권
40	축동면 사다리	산43-8	임	3,570	3,570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41	축동면 사다리	산43-9	임	2,975	2,975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위)			
42	축동면 사다리	산43-10	임	6,139	6,139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43	축동면 사다리	산43-22	구	562		국(기획재정부)				
44	축동면 사다리	산43-23	구	727		국(기획재정부)				
45 46	축동면 사다리 축동면 사다리	산43-24 산43-26	구구	825 19	825 19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47	축동면 사다리	산44 산44	임	1,289	1,289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48	축동면 사다리	산45-25	구	165	165	국(기획재정부)				
	합 계			248,498	248,498					

제 757호

□ 산업단지외사업(부진입도로) (변경)

-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 칭: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부진입도로) 개발사업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내 소형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부진입도로를 지정하고자 함
-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5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1,331㎡ [소로2-258호선 (L=84m, B=8m)] 변경 - 1,348㎡ (증17㎡) [소로2-258호선 (L=84m, B=8m)]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20. ~ 2022. 12. 31.
 - 개발방법 : 실수요자개발방식
- 5. 주요 유치업종 (해당없음)
-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 O 기정

가.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장원 대표자 최 진 태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변경

가. 사업시행자 : 위탁자 -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정형규

수탁자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나. 주 소 : 위탁자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수탁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골든타위)

^ 1 천 시 공 보

제757호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

가. 지목별현황

구틥	<u>1</u>	계	전	显	임	도	기타
필지수	당초	7	2	1	1	3	
일시구 	변경	7	2	1	1	3	
면적(m²)	당초	1,331	580	468	200	83	
[전역(m)	변경	1,348	581	495	181	91	
구성비(%)	당초	100.0	43.6	35.2	15.0	6.2	
7 % 41(%)	변경	100.0	43.1	36.7	13.4	6.8	

나. 소유별현황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7 12		741	소계 국		사천시	\\\\\\\\\\\\\\\\\\\\\\\\\\\\\\\\\\\\\\
필지수	당초	7	5	1	4	2
월시도	변경	7	5	1	4	2
면적(m²)	당초	1,331	557	39	518	774
면석(m)	변경	1,348	592	39	553	756
구성비(%)	당초	100.0	41.8	2.9	38.9	58.2
7 78 円(70)	변경	100.0	43.9	2.9	41.0	56.1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도로(소로2-258호선)	당초	1,331	100.0	
로도(조도2-200호선)	변경	1,348	100.0	

제 757호

나. 기반시설계획

구분	등급	규 류별	모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258	8	국지도로	84	소로2-257	사다리 산42-1	일반도로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변경	소로	2	258	8	국지도로	84	소로2-257	사다리 산42-1	일반도로			선형변경

9. 재원조달계획 (변경)

- 가. 사업비 330,000천원은 사업시행자가 전체 조달
-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丁七	/ 1월명	수입니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1,331 m²	330,000	120,000	120,000	90,000		
변경	1,348 m²	330,000	-	240,000	90,000		

-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붙임)(변경)
-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해당없음)
-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해당없음)
-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 사천시 무상귀속

구 분		면적(m²)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도로(소로2-258호선)	당초	1,331	100.0	사천시무상귀속
工工(工工工-230里位)	변경	1,348	100.0	사천시무상귀속

○ 사업시행자 귀속 : 해당없음

제757호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규	모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ОН	υ =	ا ب	(m)								
기정	소로	2	258	8	국지도로		소로2-257		일반도로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변경	소로	2	258	8	국지도로	84	소로2-257	사다리 산42-1	일반도로			선형변경

나.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류 258호선	소로2류 258호선	선형변경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1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산업입지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제 757호

축동일반산업단지외사업(부진입도로) 숭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변경)
 -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 로
 - (1)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급류별 번.		폭원(m)		(111)				70471	202	
기정	소로	2	258	8	국지도 로	84	소로2-257	산42-1		-	사천시고시 제2021-22호 (2021.01.14.)	
변경	소로	2	258	8	국지도 로	84		지 리 크		-	_	선형변경

(2)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류 258호선	소로2류 258호선	선형변경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5번지 일원 (변경없음)

제 757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축동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부진입도로)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	분	면적 또는 규모	비고
도 로	당초	소로2-258호선	L=84m, B=8m, A=1,331m²	
Z 2	변경	소로2-258호선	L=84m, B=8m, A=1,348 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1) 성 명 : 당초 - ㈜장원 대표이사 최진태

변경 - 위탁자 : ㈜장원 대표이사 정형규

└ 수탁자 :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2) 주 소 : 당초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변경 - 위탁자 :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 수탁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골든타위)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 준공예정일 : 2022.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 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붙임〉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가. 토지조서

(기정)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	적(m²)	소	유 자	소유권 (- 비고	
컨벤	소세시	시 빈	시축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177
1	축동면 사다리	194-1	도	285	2	사천시				
2	축동면 사다리	198	전	598	6	사천시				
3	축동면 사다리	200	전	1,253	574	•100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45, 1*동 *04호(**아파트)	진주서부 농업협동 조합	경남 진주시 진주성로 77(봉곡동)(평거 지점)	근저당
4	축동면 사다리	1049	도	89	39	국(국토교통부)				
5	축동면 사다리	산42-1	도	276	42	사천시				
6	축동면 사다리	산45	显	4,463	468	사천시				
7	축동면 사다리	산46	임	694	200	박○○	배춘리			미등기
		합	계	7,658	1,331					

(변경)

	<u> </u>	1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	적(m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	의 권리명세	비고
丁七	조세시	시 빈	시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177
1	축동면 사다리	194-3	도	2	2	사천시				
2	축동면 사다리	198-2	전	6	6	사천시				
3	축동면 사다리	200-1	전	575	575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든 타워)			
4	축동면 사다리	1049-1	도	39	39	국 (기획재정부)				
5	축동면 사다리	산42-2	도	50	50	사천시				
6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묘	495	495	사천시				
7	축동면 사다리	산46-1	임	181	181	㈜코람코자 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든 타워)			
		합	계	1,348	1,348					

나. 물건조서

	7. 비일련 소재지		22	물건의		,	-1 01	물	건소유자	관계인			n) =
구분		_ " (사천시)	지번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비고
물건	1	축동면 사다리	200-1	매실나무	25~30(R)cm	46	주	㈜코람 코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 동,골든타워)				
분묘	2	축동면 사다리	산46-1	분묘	NO. 3	1	기	미상		㈜코람 코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토지소유자	
분묘	3	축동면 사다리	산46-1	분묘	NO. 4	1	기	미상		㈜코람 코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토지소유자	
분묘	4	축동면 사다리	산46-1	잔디식재	600cm×600cm (분묘NO.3,4)	36	m²	미상		㈜코람 코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4층(삼성동,골 든타워)	토지소유자	
분묘	5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분묘	NO. 5	1	기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6	축동면 사다리	산45-26	잔디식재	600cm×600cm (분묘NO.5)	36	m²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7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분묘	NO. 6	1	기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8	축동면 사다리	산45-26	황금측백	80cm×80cm ×180(H)cm	1	주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9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분묘	NO. 7	1	기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10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분묘	NO. 8	1	기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11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분묘	NO. 9	1	기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12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분묘	NO. 10	1	기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13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비석	22cm×90cm ×10cm	1	식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14	축동면 사다리	산45-26	잔디식재	600cm×600cm (분묘NO.8,9,10)	36	m²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15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분묘	NO. 11	1	기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16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비석	16cm×90cm ×8cm	1	식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17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분묘	NO. 12	1	7]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18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비석	24cm×80cm ×10cm	1	식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19	축동면 사다리	산45-26	상석	60cm×60cm ×10cm	1	식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20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내축	160cm×30cm	1	식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21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둘레석	75cm×50cm	7	EA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22	축동면 사다리	산45-26	잔디식재	800cm×800cm (분묘NO.11,12)	64	m²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23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분묘	NO. 14	1	기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분묘	24	축동면 사다리	산45-26	비석	16cm×100cm ×10cm	1	식	미상		사천시		토지소유자	
	합	계		24건				1인		2인			